

동안 15주 과정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장애성인 프로그램

강좌명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아카데미		
강좌 소개	본 교육과정은 성인기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통합된 환경에서의 기능성을 증진시켜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수업기간	한 학기(15주 과정)		
강의시간	토요일 오전 9:30-12:30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30세의 발달장애인 중 특수학교 고등부 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 시각장애 혹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자 · 본원에 등하교가 가능하거나 등하교에 지원이 가능한 자 		
전행방법	선착순 (담당교수와의 면접)		
평가	출석 및 학업성취에 따라 평가를 실시		
수료증	3학점 이수자에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		
교육과정	교육 내용	학점	담당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지역사회생활을 향하여 · 이화여자대학교의 환경 · 지역사회생활 · 직업생활 · 자기관리 · 여가생활 · 부모모임 · 총 정리하기 	3학점	○○○ 외

※ 자료의 출처 : <http://home.ewha.ac.kr/~sce/programs.htm>

그러나 아직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제외하고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중등교육 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외계층(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내용을 통해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표5> 참조).

<표5> 교육인적자원부 소외계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내용(2001-2004)

연도	지역	기관명	프로그램명
2001	경남(마산)	창신대학	장애인을 위한 전산 및 법률 교육 프로그램
	서울	성공회대학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감성 및 인성 교육 마당
	인천	화도진도서관	음악 교실
200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생활 아카데미
	인천	화도진도서관	한마음 음악교실
2003	서울	YMCA녹번종합사회복지관	빠꾸기등지 만들기(정신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인천	화도진도서관	한마음 음악교실/민들레 독서회
2004	광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 가정학습 무료지원사업
	전북	전북평생교육정보센터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 자료의 출처 : 이경아(2005).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장애인 교육 실태 및 요구. 장애인 진로 및 평생교육 실태조사 연구 전문가협의회(미간행 인쇄물). pp.107-118.

4) 발달장애인 성인교육 사례

뉴질랜드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오클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오클랜드공과대학(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Unit)과 유니텍(University of Technology, UNITEC)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의 대학은 대학 내에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반 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 학급이 개설된 지는 15년째에 이르고 있다. 편성은 한 학급 15명(정신지체 10명, 자폐 신드롬 4명, 청각장애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사 1명이 시간제로 일하는 수화통역사와 언어치료사 등의 보조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직업생활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산수, 읽기, 쓰기, 의사소통, 고용에 관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로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으로 등교시간을 지켜 직장생활에서 시간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의사소통지도를 위해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 어제 있었던 이야기, 인터뷰, 발표를 위한 지도 및 일기쓰기, 편지쓰기 등 창작 지도를 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원고용 및 고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학생 중에는 시간제로 수퍼마켓, 버저킹, 공원 등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이 과정은 6개월 단위로 수료증이 나오며, 고용수준에 이를 때까지 재등록이 가능하다. 수료증은 6개월 과정과 1년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UNITEC 역시 대학 내에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반 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

학급에서는 7개국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사회와 지역사회, 고용 개인생활, 전환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받고 있다.

이곳의 규모는 앞의 대학보다 훨씬 크고 개설된 과정들도 다양하다. 크게 (1) 일과 관련이 있는 생활기능중시의 접근으로 학생들의 직업 적응을 돕기 위한 직업적이고 교육적인 특성을 가진 '읽기와 쓰기 및 학습' 과정, (2) 제3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학업 적응이나, 흥미 면에서 어떤 특기 갖거나 향상시키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학업준비 및 생활 기술을 주로 익혀 주는 '캠퍼스 경험' 과정, (3) 정신병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신병 이해하기' 과정, (4) 장애의 훈련 혹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5) 직업적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직업기술' 수료 과정, (6) 성공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을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직업과 지역사회 기술'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다.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시 하위 과정들로 짜여져 있다. 각각의 과정은 별도의 강의실과 별도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업 시수도 과정의 특성이나 난이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다만 어느 과정이나 6개월의 학기제를 두고 두 학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학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조건이 다양하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등교하는 'school student'도 있고, (2) 주중 1회만 등교하여 주로 대화하기, 모닝 티 시간 갖기, 컴퓨터를 이용한 읽기와 쓰기, 듣기, 말하기, 질문하기, 요리하기 등에 참여하는 'wens day student', 중증장애 과정으로 48시간 캠퍼스 경험하기, group home이나 집에서 거주하며 요리, 컴퓨터 사용, 음악, 미술 활동들을 주로 하는 'weekend student', 직장을 잃은 후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성인'도 있다.

각 과정은 보통 15명 정도로 구성되며, 지도 인력은 읽기, 숫자지도 등을 담당하는 정규교사 2명, 시간제 교사 2명, 자원봉사자 15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쓰기교육은 은퇴한 교사들의 자원 활동을 통해 1대1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적은 사례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뉴질랜드의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의 형태와 유사하다. 같은 대학 캠퍼스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활동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거나 대학의 중심으로부터 한적한 곳으로 벗어나 있어 캠퍼스를 다른 대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수진 역시 대학교수가 아닌 교사나 시간제 교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대학의 교육과정과는 상관없이 짜여져 있다. 그야말로 특수학교를 거대한 대학 캠퍼스의 한 모퉁이에 옮겨다 놓은 것과 거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 형태를 바람직한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설

대학에서 발달장애인의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모든 학과에서 발달장애인의 입학허

용하는 방안, 둘째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학과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셋째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대학의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에는 대학과 교육행정당국자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완고하여 처음 두 방안은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듭해 나가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물리적 환경만이라도 발달장애인이 함께 공부하며 공부할 수 있는 차선택으로서 대학 내 부설 평생교육원을 개방하는 세 번째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의 장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승희, 2004). 그 이유는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거의 같은 연령대의 성인기에 있는 학생들과 캠퍼스를 공유하고, 같은 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대학 환경 자체가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통합된 형태의 사회라는 데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닫힌 공간에서 범하기 쉬운 처방적이고, 유일하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객관주의적 교육과정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다중적이고, 포섭적이며 주관적인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대학이라는 열린 공간은 기능생활중심의 생태학적 접근과 총체적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성인기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연령기에 맞는 자기결정력과 적응 기술들(skills)을 성공적으로 익힐 좋은 교실이라는 점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보다 그 수혜자인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서는 언제든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바꾸어나갈 수 있고, 특정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개별화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학기제를 기본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들에게 빠른 성취감과 그들의 학습특성을 파악해 계속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기존 대학의 정형화된 학제나 커리큘럼, 높은 학습 수행 요구 등과는 확연히 다르다. 현재 대학관계자들이나 교육행정 전문가들도 수월성을 중시하는 대학 교육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진학을 아직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2)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원칙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정할 때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지역사회 중심일 것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교육적 과제는 지역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안착(soft-landing)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보호자와 사회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중심이 아닌 기능생활중심의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나와 가족, 이웃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지역사회를 알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적응 기제들을 익히고 연마하여 세련시키는 것을 모든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②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교육과정은 목표 수준을 획일화하기보다는 범주화하여 운영 중에도 언제든 수정과 환류가 가능한 느슨한 틀로 구성한다. 따라서 강사는 반드시 개별화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제적 지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 또한 운영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즉시 확인하여 다음 강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개발협의회' 등을 조직 협의한다.

③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성취감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

발달장애인들은 개인 간 차가 매우 크므로 동일한 강좌라 하더라도 목표수준의 조절만으로는 전체가 다 만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사가 개별화교육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강좌의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종이공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같은 종이공예 기술을 익히더라도 소근육 발달이 더딘 학생은 지점도 공예를, 섬세한 조작기능과 집중력을 가진 자폐성 발달장애인에게는 접기 공예를, 또 다른 어떤 학생에게는 선물포장을 성취목표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안정화를 위한 전략

① 단계적인 확산

2001년부터 시작된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적응 아카데미'는 대학 내에 특수교육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학과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내용, 펀드 조성, 인적자원(대학원생 중심의) 공급은 물론 그 운영 효과 연구까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실험적이거나 단발성 강좌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 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366개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어 거의 모든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평생교육원 모두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개설하기에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화여대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학 내에 특수교육과나 치료교육과, 재활복지과 등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있는 대학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먼저 시작하는 것이 훨씬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② 기존의 발달장애인 프로그램과 차별화

그러나 대학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평생교육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성인교육 현장에 피해를 주거나 발달을 저해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성인 프로그램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선정과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발달장애 성인들의 일일생활 계획과 지역사회 안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교육에 상호 보완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보다 우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발달장애 성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로 다른 분야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분야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성과 차별화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교육 인력 양성

평생교육법 제17조에는 평생교육사의 자격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에는 평생교육사의 양성기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생교육사는 1급에서 3급까지로 나뉘며, 대학이나 교육부령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만이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자격요건만 가지고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기에는 그 전문성이 우려된다. 즉, 교육부령이 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관련과목에 특수교육관련 과목은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2학점, 필수 과목Ⅱ)과 '장애인교육개론'(2학점, 선택과목)이 전부이다. 필수과목만 48개 교과 96학점이나 개설되어 있어 필수과목 학점이 14학점임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을 선택할 확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단평가와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4)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에 따르면, 과 및 제11조에 의하면, 학교는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평생학습

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평생교육법 제9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되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평생교육법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대학의 교육적 기여를 하나의 사명으로 제시한 것이며, 국민의 평생교육이 국가적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과 더불어 그동안 국민의 일부이면서도 제도권 교육이나 비형식적 교육 기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해온 발달장애인의 중등학교 이후 교육에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대학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의지를 촉진시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가는 (1)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 담당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2)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투자, (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발달장애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비 보조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확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청각장애학생의 속기(문자통역) 지원 시스템

1) 대학에서의 속기 지원 필요성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실시로 2004년 현재 76개 대학(2년제 포함)에 약 1,90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조사된 자료가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가운데는 지체장애를 비롯해 청각장애가 수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의 장애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요구하는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장애는 크게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체장애의 경우 주로 캠퍼스 이동 및 접근편의(캠퍼스나 교사의 계단, 출입구의 단차, 층간 이동을 위한 수단, 이용시설의 충분한 공간 등)를 요구하며, 시각장애의 경우 이동 및 접근편의와 함께 정보 접근편의(강의교재, 핸드아웃, 강의록, 참고자료 등의 점자 또는 음성 변환 자료)를 요구한다. 이에 비해 청각장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동 및 접근편의에 대한 요구는 적을 수 있으나, 정보 접근편의에 있어서는 시각장애학생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요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청각장애인은 언어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수단으로 음성보다는 시각을 사용하므로 음성언어가 주된 강의를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강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화로 통역해 주거나 문자로 전달하는 지원 서비스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을 지원할 할 인력으로는 수화통역사와 속기사가 있다. 시각장애를 지원하는 점역사와 달리 이들 인력은 강의실에 직접 투입되어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른 장애에 비해 지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몇몇 대학들에서 청각장애학생 지원 인력으로 수화통역사의 필요성은 크게 인식되

어 왔다. 실제로 재학생 중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과 캠퍼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수화동아리 회원들의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수화통역은 이들을 위한 완전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화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수화는 촬영을 해 두지 않으면,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이다. 즉, 지속성과 보존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내용은 학기말 평가를 위해 다시 복습을 하거나 정리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화로 전달된 내용은 말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의 습득과 이해, 보존,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보존성이 생명인 문자화는 의회나 법원에서의 기록만큼이나 개인의 학습발달에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수화가 갖고 있는 학습상황에서의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필 지원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그것은 강의 내용의 요약 전달에 그칠 뿐 전체 전달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는 곤란이 따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강의 전달 문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컴퓨터 속기(실시간 문자통역)에 의해 열리고 있다. 컴퓨터 속기는 진행 중인 강의 내용을 모두 실시간 문자로 변환한 후 청각장애학생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강의가 끝나면 알맞게 편집하여 제공하는 대필(note taking)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속기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각할 수 없었던 지원분야라 아니할 수 없다.

2) 대학에서의 속기 지원 현황

우리나라보다 일찍 기계식 속기가 발달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속기사들의 강의 자막 지원 서비스가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이다. 그 예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가주 주립대학에서는 수화에 익숙하지 않은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 두 가지 강의 전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실시간 자막 지원(Realtime Captioning Service)과 타이핑 자막 지원(Typewell Captioning Service)이 그것이다. 실시간 자막 지원이란 고도로 숙련된 속기사에 의한 전문적 지원을 의미한다. 이들은 순식간에 강의 내용을 말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영어 문자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수화를 못하는 농 학생이나 난청학생들에게 유용하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속기사는 텍스트를 학생들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린트물이나 파일로 제공한다. 이에 비해 타이핑 자막 지원은 PC나 노트북을 이용하여 강의 내용을 요약만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다. 강의 시간 중에도 학생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요점을 제공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http://ncod.csun.edu/index.html>).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장애지원센터(Disability Resource Center)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화통역은 물론 속기자막(stenocaptioning) 서비스를 하고 있다(<http://www.stanford.edu/group/DRC/>). 조지아대학의 장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부(Student Affairs Division)에서도 청각장애학생들의 지원 가운데 실시간 자막지원을 주요한 서비스로 채택하고 있다.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도로 숙련된 속기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강의 시간 동안 문자화된 자료는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PC모니터에 뜨게 되며, 강의가 끝나고 나면,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http://www.dissvcs.uga.edu/framemainservices.html>).

영국의 왕립농아연구소(The Royal National Institute for Deaf People)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Lipspeakers, Notetakers, Speech-to-text operators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성 문자 교환 서비스(Speech-to-text operators)에는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청각장애인의 문자 지원을 하는 SpeedText라는 서비스와 함께 기계식 속기 방식으로 음성을 문자로 실시간 변환해 지원하는 Palantype 서비스가 있다 (<http://www.rnid.org.uk/html/services/communication>).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2년제 국립대학인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처음으로 전문 속기사 배치에 의한 컴퓨터 속기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모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하는 1급 자격을 갖춘 속기사들이다. 이들은 장애학생 지원센터인 장애학생지원관에 소속되어 10개 학과 70여명의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사들과 협력하여 수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수화통역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실시간 자막 서비스(Real-Time Captioning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3) 장애학생 지원 속기사의 자질

속기(速記)의 한자말이 갖는 의미만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은 빠르게 기록하는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속기사는 무조건 빨리만 기록하면 훌륭하다고 오해한다. 일견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속기사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속기사에게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야에서 속기를 하는가에 따라 역할 기능이 다를 수도 있다. 어쩌면 속도라는 것은 역할 기능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속기사의 일반적 자질

홍기표(1998)는 '속기총람'을 인용하여 속기사의 자질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 첫째,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하며(청취능력),
- 둘째, 그 발언 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하며(운필능력),
- 셋째,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수문능력)

즉, 청취능력(聽取能力)과 운필능력(運筆能力)과 수문능력(搜文能力)이라는 세 가지는 완벽한 속기사의 작성을 위해 속기사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3대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청취능

력은 상대방의 부정확한 발음이나 소란스러운 여건으로 중간 중간 정확한 음을 놓치는 경우, 속기사의 청취오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말하는 사람이 설측음이 되지 않아 '바람'을 '바담'이라고 한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천사'라고 말해야 할 것을 그때마다 계속 '악마'라고 한다거나, 또는 속기사가 'UR 협상'을 '6월 협상'으로 오청(誤聽)하는 경우 이를 사전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하여 신속히 바로잡으면서 기록하는 능력이 곧 청취능력인 것이다.

운필능력(기계식 속기에서는 '運指能力'라고 해야 더 정확한 의미임. 이하 '운필'은 '운지'로만 기술함)은 선천적인 기능이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재능(또는 '끼', talent)라고 하는 것이다. 홍기표(1998)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특유의 빠른 손놀림과 순간순간 언어를 분석하고 부호화할 수 있는 예민한 언어감각을 지닌 사람은 속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20~30명에 한 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말은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배가된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국회속기양성소 응시자격을 대졸이상으로 하여 소정의 교양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입학시킨다고 한다.

수문능력은 음성언어를 문자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이라 하겠다. 우리말의 음성언어는 대부분 주어가 생략되거나 대답의 경우 명사 수준으로 끝을 맺거나, 말의 끝을 올리거나 내림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이는 음성언어의 경우 이렇게 빠진 부분을 표정이나 몸짓, 감정이 실린 음의 강약, 부드러움 등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음성언어의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음성언어만을 모사하여 문자로 기록할 경우 그 기록물은 말한 이의 메시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여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하는 능력이 수문능력이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속기록에 "밥 먹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단순히 이 문장만을 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다. '누가 밥을 먹으라.'는 것인지, '내가 밥을 먹어도 되느냐.'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이야."라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위의 문장은 "너는 이제 밥을 먹어라."라거나, 아니면, "내가 밥을 먹어도 돼?"라는 문어체의 문장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문능력의 핵심은 기본적인 문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각종 문장부호, 문법지식의 정확한 사용능력이 그것이다. 이는 속기 중에는 물론이고 번문이나 편집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한 청취, 운지, 수문 능력은 일반적으로 모든 속기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질이 각각 종사하는 분야에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는 역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서의 자질

대학의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속기사는 앞서 제시한 속기사로서의 일반적인 자질을 업무의 특성에 맞게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원하는 학과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의회 속기나 법원 속기와는 달리 전사(全寫) 자체보다도 강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파악하여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전달(運指)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자가 강조한 부분은 특수

문자로 표시하여 학생들이 주지하게 한다든가, 회상할 수 있는 단서를 고안하여 보여준다든가 하는 것이 예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속기사들은 대학에서 실시간 자막 속기 지원 능력은 갖추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전공서적 읽기와 앞으로 강의될 내용들을 사전 숙지함으로써 청취력과 운지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새로운 용어를 한 번 습득하면 그것이 틀린 용어인지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강의가 끝난 후 축적된 그 시간의 텍스트 자료를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텍스트 자료는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하나는 원래의 속기문서를 맞춤법이나 오타 교정 수준으로 편집하고, 나머지 하나는 요점만 간추려 편집한 것이다. 이 둘을 별도의 문서로 만들 것이 아니라, 내용만 '원문'과 '요약문'으로 나누어 하나의 문서파일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굳이 원문을 제공하는 것은 곧 강의를 반복 회상하는데 수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학생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동시제공이나 어느 하나의 제공이나를 결정하는 것도 개별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밝힌 대학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속기사가 해야 할 지원 자질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과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아 청취력과 운지력 향상을 기함으로써 정확한 속기 자막을 지원한다.

둘째, 강의실에서 기록한 원문은 수문과정을 거쳐 다음 시간 전까지 해당 학생에게 요약문과 같이 제공한다.

4) 대학에서 속기사의 역할

대학에서 속기사가 하는 일은 우선 수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학생의 실시간 자막 지원이 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매 학기 초 시각장애학생들이 듣게 될 강좌의 주 교재를 짧은 시간 내에 한글문서로 텍스트화 하여 점역하는 작업에도 속기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주로 다음 학기를 앞둔 방학 중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밖에도 시험 중 필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필지원이라든가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가적인 역할이 많다.

(1) 정규 강의 지원

학기 초 짜여진 지원 시간표에 따라 강의에 출석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자막지원 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장애학생 지원 속기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속한다. 속기사는 해당 교수로부터 차시 강의 내용을 전달받고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속기에 임하며, 학생에게 메신저를 통해 자막 서비스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여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질

문을 유도하고 그 질문을 받아 전달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 들은 용어들에 대해 강의자에게 확인한 후 강의 원문과 요약문을 포함한 강의 파일자료를 메일로 학생에게 발송한다.

(2) 장애학생 관련 특별프로그램 지원

대학에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총무처나 교무처, 학생처, 장애학생 지원센터 등 대학 기관에서 추진하는 입학식, 졸업식, 총학장의 특별강좌, 명사초청 강연 등 학생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있다. 이때 속기사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속기지원을 해야 한다.

(3)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강의 교재 점역 기초자료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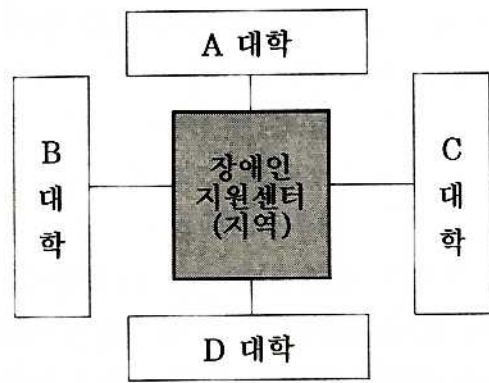
점역사와 협력하여 다음 학기에 사용될 교재의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점역하기에 알맞은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현재, 교재의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 받아 OCR 프로그램을 이용해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식률이 낮은 경우 교정 과정이 만만치 않아 전체적으로 속기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5) 속기(문자통역) 지원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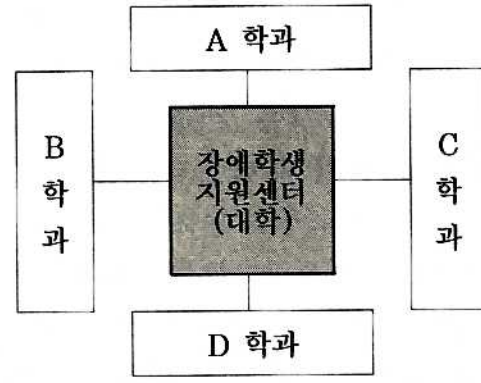
속기 지원은 대부분 학생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라나 지역에서는 굳이 대학 내에 속기사를 배치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학의 학생처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학내 청각장애학생들과 연결시켜 주는 중개기능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속기사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 기관에 소속되거나 파트타임으로 계약하여 학교에서 의뢰를 받아 필요한 시간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면 된다([그림1] 참조).

영국에서는 왕립농아연구소(RNID)가 주관하여 공공전화에 청각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이면 언제 어디서나 개인과의 문자통화, 회의, 강의 자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Typetalk" 서비스를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http://www.rnid-typetalk.org.uk/frame.html>). 이 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자발신기(Textphone)로 RNID에 연결 서비스를 요청하고 RNID로부터 Typetalk 지원을 받아 상대방의 수신기(telephone)의 내용을 전달받는 의사소통 지원체계이다. 실제로 정확한 언급은 찾을 수 없으나 아마도 Typetalk 지원 팀에는 전문 속기사가 배속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재학비율이 높거나 청각장애학생들이 많은 대학의 경우 교내 학생처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전문 속기사를 배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그림2] 참조).



[그림1] 지역사회중심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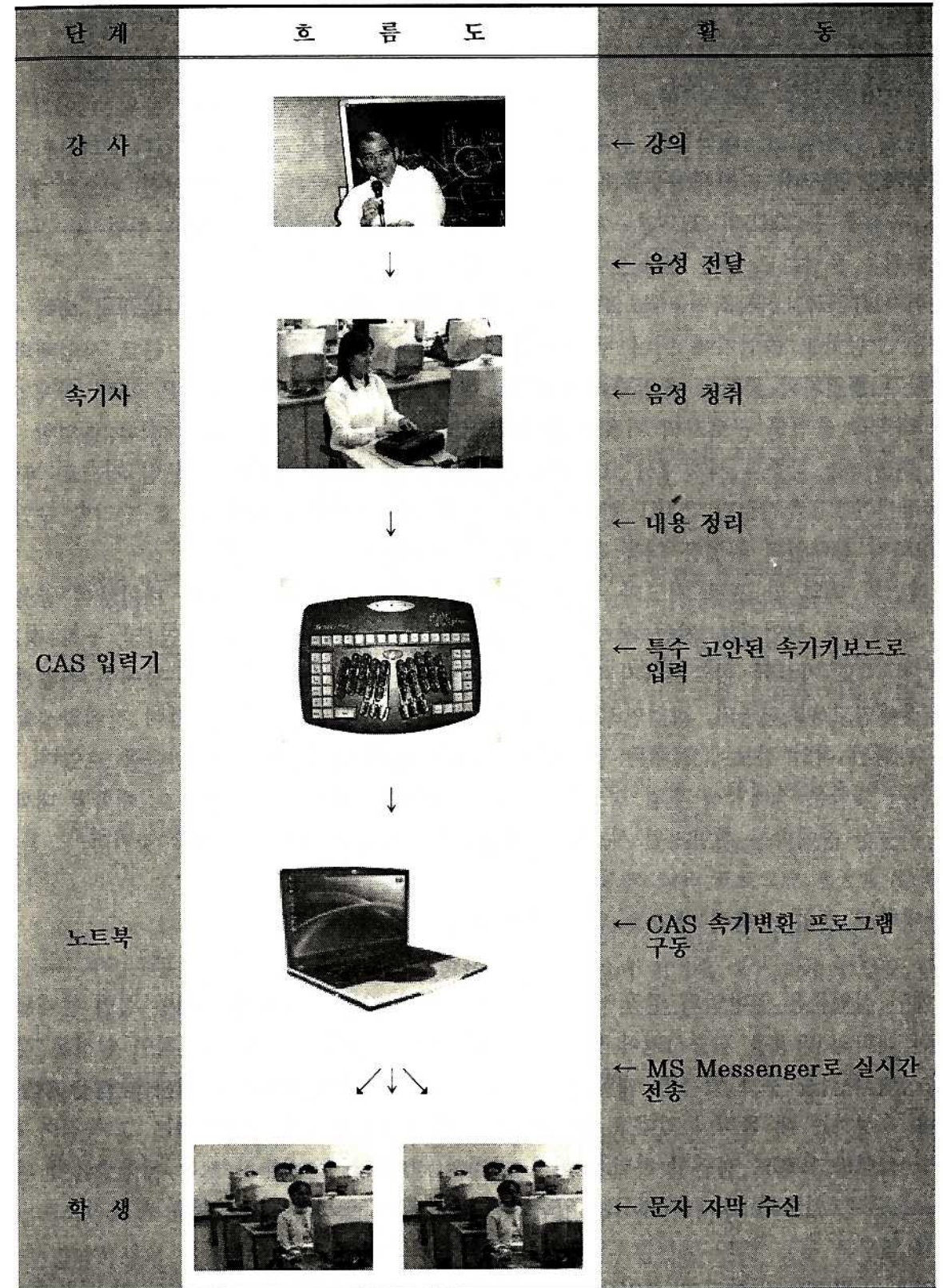
[그림2] 대학중심 지원체계

국내 대학 가운데는 현재 한국재활복지대학이 이 시스템을 갖춘 대표적인 대학으로, 장애학생지원관에 속기사 7명(일용 2명 포함)이 배치되어 청각장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속기지원은 '① 신청 및 접수 → ② 지원시간표 작성 → ③ 속기지원 → ④ 지원평가 → ⑤ 피드백'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접수에서 지원 및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제시하면 <표6>과 같다.

<표6> 한국재활복지대학 장애학생 속기 지원 절차

절 차	①신청 및 접수	②지원 시간표 작성	③속기지원	④지원평가	⑤피드백
수행자	· 본인 · 학과 조교 · 직접 · 홈페이지 이용	· 장애학생지원관	· 속기사	· 속기사 자체 · 지원팀 전체	· 자체연수
시 기	신학기 시작 전		학기 중	수시, 방학 중	학기말/학년말

한편 현재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실시간 속기 자막 지원 서비스는 [그림3]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3] 한국재활복지대학 속기 지원 흐름도

5. 장애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시스템

학생들의 취업은 갈수록 학교의 대외적 위상과 신입생 유치 경쟁에서의 우위, 나아가 학교의 생존과도 직결되므로 대학들은 한결같이 취업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대학의 관심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윤점룡 등(2002)의 조사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12.6%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문헌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분석에 따르면, 300인 이상 근로 사업체의 대학 졸업자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300인 미만 근로 사업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장애인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있겠으나, 대학을 졸업한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만약 이러한 불일치를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고학력 장애인의 취업은 더욱 활성화 되리라 기대한다.

장애인의 취업 및 진로 지도와 관련한 조사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모든 대학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애학생 취업정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공이나 계열별로 구인 및 구직 정보에서 취업 전 지도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 내 장애인 취업관련 기관들(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안정소, 취업정보 포털 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장애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취업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은 장애학생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들을 수행하고, 대학별 대학간 연계가 가능한 장애학생 취업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장애학생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

장애인 실업률은 일반인의 일곱 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주로 전인적인 인성을 갖춘 인간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대학은 그야말로 사회 각 분야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2-3년 과정의 대학에서는 그 목적이 취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비롯한 모든 재학생들이 완전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학과의 책임으로 돌아가겠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전담 부서나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같은 전담기구에서 개별화 전략을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장애학생들의 효율적인 취업 관리를 위해서는 <표7>과 같은 핵심 전략들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7> 장애학생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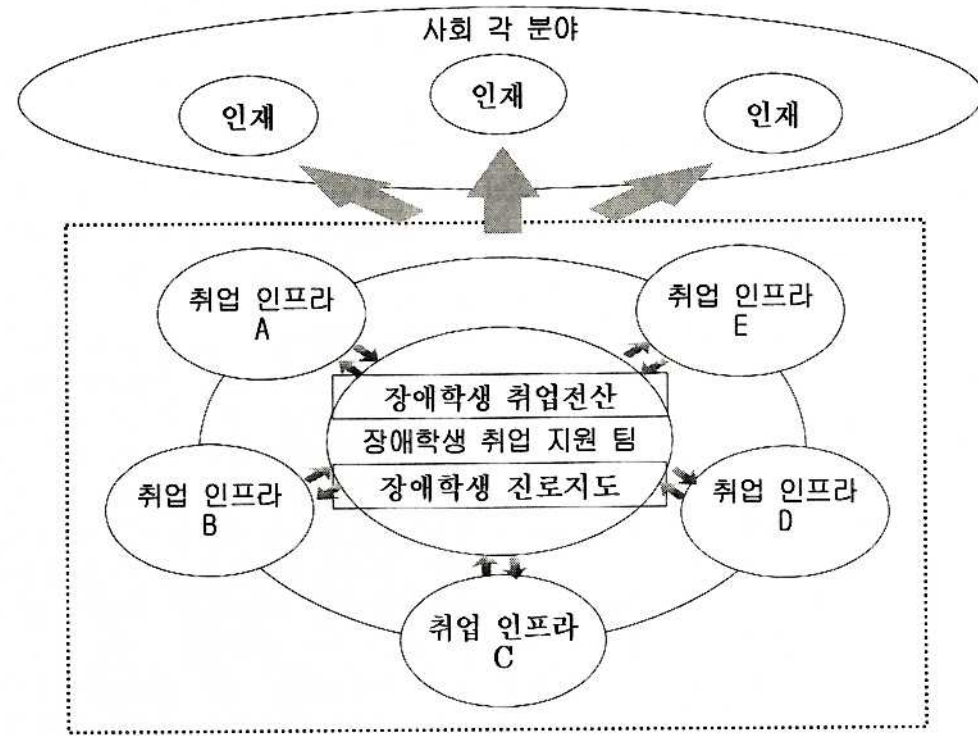
핵심 전략	수행 내용
학생 관리제	취업 성공을 위한 학생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선발단계에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업 능력, 취업 적성, 상담, 포트폴리오 목록(자료는 학과에서 관리) 등 학교가 취득한 모든 학생 정보를 개인별로 누적하여 최종적으로 취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교수-학습 운영 강화	교수-학습 운영을 강화한다. 튜터 시스템(tutor system)을 도입 운영하여 학과 수업의 충실성을 기하고, 취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도구교과 즉, 컴퓨터, 영어, 논술(보고서 작성 등)은 물론, 전공별로 요구되는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들 과목에 대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현장에 기초한 직무분석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과나 계열별로 교내 지원 부서의 협력을 받아 취업 현장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요구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 인력 육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자영업 취업인력을 육성한다. 일반고용이 여의치 않거나 창업 적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별하여 별도의 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하고 사회적 창업 인프라(창업지원금,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를 활용하여 이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단계별 진로지도 및 취업 전 교육	단계별 진로지도와 다양한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학과에서는 홍보 단계에서부터 전공 특성과 인·적성 요목을 안내함으로써 신입생의 올바른 학과 선택을 유도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입학 후 한 학기 이내에 기초학력진단 및 취업 인·적성 검사 등을 통한 개인별 진로파일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교수는 학생의 예상 적정 직종에 대한 개별화된 지도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한편, 대학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 소양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자격증 취득, 공무원 임용, 창업지식 및 준비 등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교수 책임 지도	취업에 대한 교수의 책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체계적 시스템과 다양한 취업 인프라를 갖추고 동시에 취업에 대한 교수 책임을 중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장애학생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학생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들이 해 왔던 간헐적이고 단속적인 정책들을 제고하고, 단절된 학내 조직과 지역사회와의 고립적 관계를 해체하고 장애학생의 선발에서 교육, 취업, 더 나아가 취업 이후까지를 연결 짓는 최상의 취업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취업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간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수행할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고, 취업에 직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취업 인프라를 네트워크 하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기구로 '장애학생 취업 지원팀'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학생 취업 지원팀은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에서 취업까지 시간계획(Time schedule)을 수립하고

총체적인 취업 전 교육을 수행하는 장애학생 진로지도 시스템과 모든 취업 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는 취업전산 시스템을 운영한다([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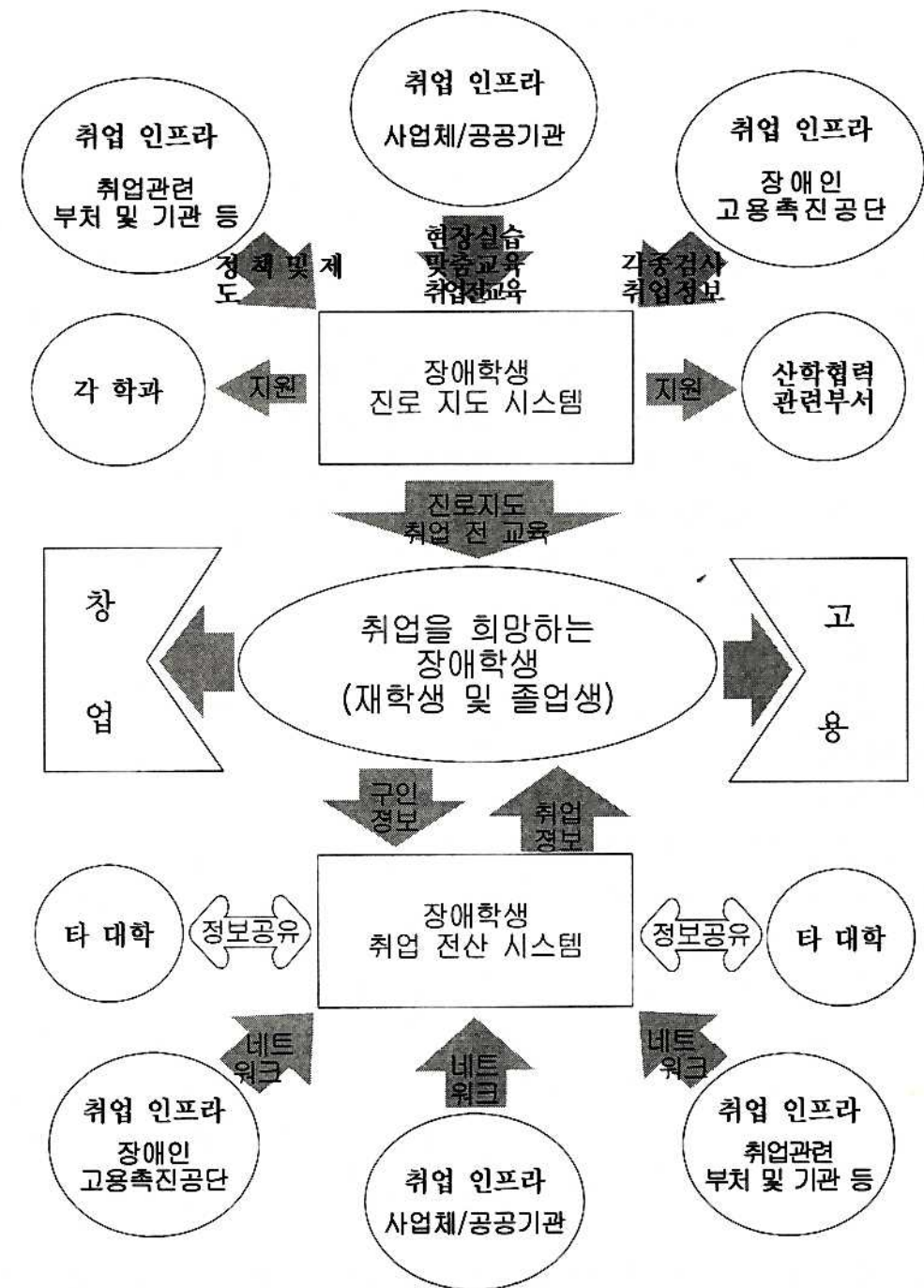


[그림4] 장애학생 취업 지원 시스템

아직은 흩어져 있는 취업 인프라를 고등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그러한 인프라와의 협력 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장애학생 취업 지원팀의 활동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체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림4]는 장애인의 취업 지도를 위한 학교 자원과 국가 및 지역사회 인프라를 결합한 종합 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장애학생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체계도이다.

[그림5]에서는 취업 현장과 학교,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취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입학에서 취업까지를 관리하는 진로지도 시스템과 모든 취업 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는 취업전산 시스템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림5]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 취업 지원 체계

6.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법령의 제 정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관계 법령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것은 현재의 법률 규정들이 헌법에서 교육기본법까지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울 수는 있으나 원래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어서 마땅히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연구에서도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편의 보장과 이동 및 접근편의 보장, 그리고 대학의 학칙과 규정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이라고 여겨진다. 교육기본법에는 장애인이 통합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상에 대학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기구, 학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장애인 교육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동법이 제정 당시부터 장애인의 유·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에만 국한하여 적용되어 왔고, 그 내용을 대학 교육까지로 확대하기에는 오히려 대학에서의 장애인 교육을 지엽적이고 분리된 제도로 고착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면 개정 10년째를 맞아 일부 단체에서는 동법의 전면 폐지와 장애인교육지원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으며(장애인교육권시민연대, 2005),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각 조항들을 해당 교육 관련법에 포함시켜 개정하고 본 법률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김주영, 2004). 그러므로 완전 통합 환경에 놓여있는 현재의 대학교육 시스템을 굳이 특수교육진흥법으로 끌어들이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장애인의 대학교육 제도를 규정하는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완 정비하여 법률적 근거들을 분명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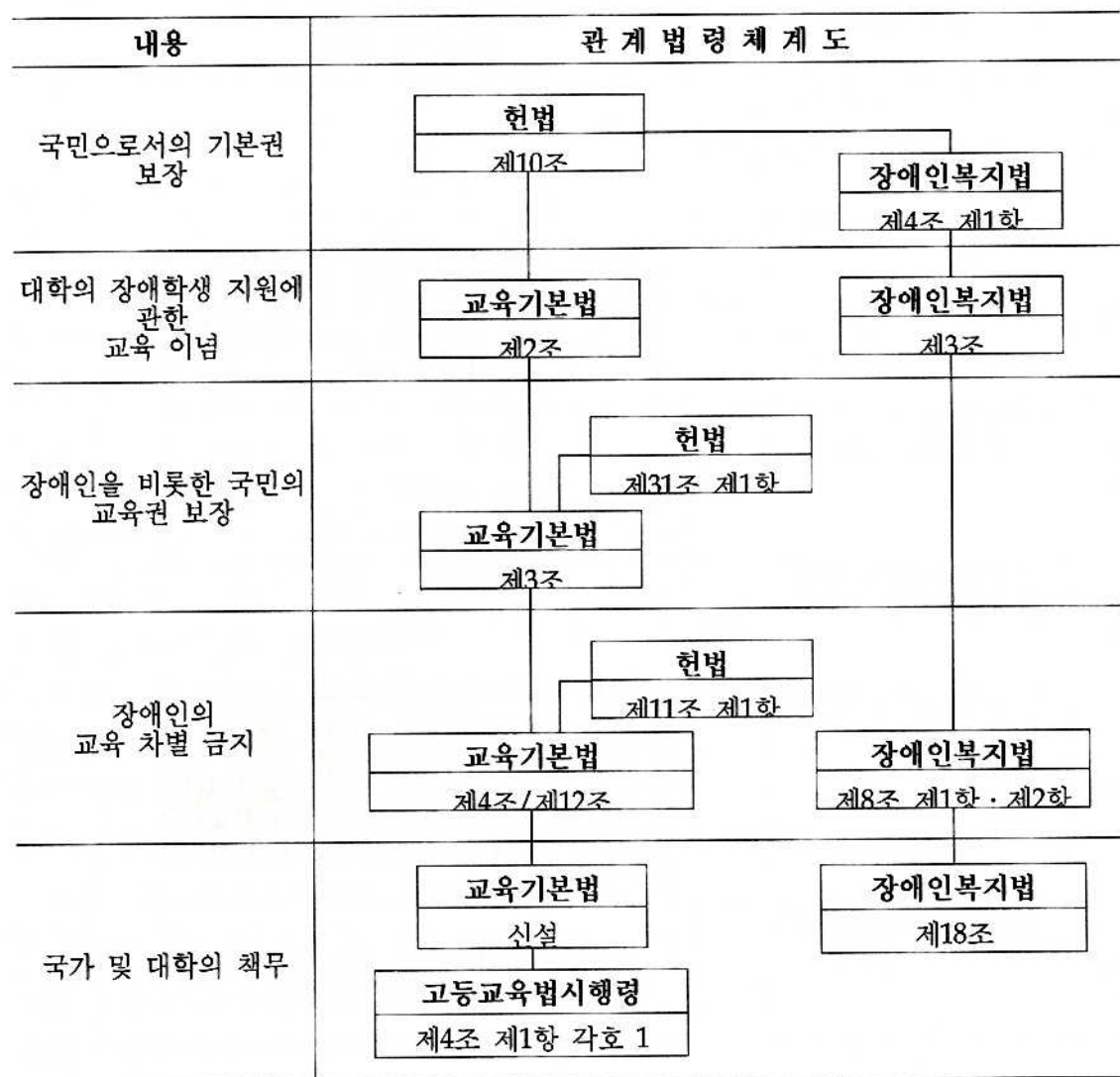
- 첫째,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및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은 현재와 같이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유지한다.
- 둘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이념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본이념인 사회통합 실현을 바탕으로 하되, 교육 현장의 관점에서 통합교육 이념을 강조하여 규정한다.
- 셋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대학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한다.

<표8>은 이상의 방향에 맞추어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표8>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법규 개선

	관련 법규	개정 혹은 신설 조문	
		현행	개정 및 신설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	현행	상동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이념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1항 개정	생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교육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 능력,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 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4조	생략	상동
차별금지	· 교육기본법 제4조,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생략	상동
국가의 책임	· 교육기본법 내 '통합교육' 조문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가 각급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자 할 경우 이들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의 책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 추가 신설	-	1.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학내 지원(지원 기구 및 장애학생 지원 규정)

한편 이상의 법령을 체계화시켜 보면 [그림6]과 같다.



[그림6] 우리나라 장애인 고등교육 관계법령 체계도

7. 장애인의 다양한 고등교육 욕구 수용 전략

2004년 현재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72개(전문대학 23개 포함) 대학으로 이들 대학에 총 1,646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34.5%(1/3 이상)에 이르는 56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2개의 특정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72개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가운데 이들 두 대학의 장애학생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정책이 타 대학과는 달리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에 있다 하겠다. 즉, 양 대학 모두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으며, 계속해서 학내 이동 및 편의시설 투자를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을 특성화함으로써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이 소수 특정 대학에만 지원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대학들의 장애학생 지원 개선이 더디질 것이며, 원거리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가로막게 될 것이다. 또한 소수

대학의 전공영역으로만 집중 진학함으로써 사실상 여러 학문을 접할 기회가 상실되어 장기화할 경우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영역의 단순, 편중 현상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정책입안자를 비롯하여 대학 관계자들도 몇 개 대학에 장애학생들이 몰림으로써 해당 대학의 부담이 점차 높아질 것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 경험을 키우게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김주영, 2005). 물론 대학의 설립취지나 특성화 사업에 따른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으나 장애인들이 집중되는 몇 개의 대학만 장애인 지원 시스템이 발달함으로써 그 밖의 대학들에 장애학생 지원 노력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를 조기에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수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몰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대학의 다양한 장애인 유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수 특정 대학들이 취하고 있는 총체적 장애인 지원 시스템 유인 경쟁 전략을 벗어나 대학마다 특성화된 형태의 장애인 유인 경쟁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한다면, 현재와 같은 2개의 대학이 전체의 1/3 이상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이상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학과 중심의 특성화 대학이다. 학과 중심의 특성화 대학 모델은 대학의 전 분야를 개방하기 곤란할 경우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혹은 장애인들을 전문화시켜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몇 개의 특정 학과를 지정하여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과 교수 및 지원 인력, 이동 및 접근 시스템을 집중 육성하여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계열 혹은 단과대학 중심의 특성화 대학이다. 계열 혹은 단과대학 중심의 특성화 대학 모델은 디자인(귀금속, 생활환경, 실내건축 등), IT, 예능(음악, 미술, 문예 등) 등 특정 계열이나 단과대학을 장애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최상의 여건으로 투자하여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의 NTID를 들 수 있다.

셋째로는 특정 장애 중심의 사이버 특성화 대학이다. 특정 장애 중심의 사이버 특성화 대학 모델은 대학 내 활동이나 생활이 곤란한 중증 장애학생들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방송통신대학 시스템을 응용하거나 그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는 특정 장애 중심의 특성화 대학이다. 앞서의 모델들이 대학의 일부만을 집중 투자하거나 기존의 인프라를 변형함으로써 비교적 절감된 투자로 가능한 형태라면, 특정 장애 중심의 특성화 대학 모델은 처음부터 특정 장애의 고등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소규모 종합대학이나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예술대학,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능대학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대학의 특징은 각 장애특성을 최상으로 고려하여 시설에서 지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해당 장애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굳이 들자면, 한국재활복지대학도 유사한 모델로 볼 수 있을 것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인의 기능인 양성 대학인 일본의 츠크바기술단기대학, 청각장애인의 종합대학으로 설립된(지금은 일반인도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미국의

갈로데대학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다섯 번째로는 무장애 대학이다. 무장애 대학 모델은 말 그대로 기존의 대학 시설과 인적 물적 지원 시스템을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만든 대학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이 지향해야 할 모델이지만, 이미 설립된 지 오래되거나 영세한 대학들로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구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가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이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와 같은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다섯 가지의 모델은 아직 국내에 없거나 불완전하게 시도되고 있는 형태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마지막 모델인 무장애 대학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인상이 짙다.

정정진(2002)은 한 전문가협의회에서 우리나라대학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캠퍼스를 세워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대학들은 캠퍼스의 구조를 하루아침에 개조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앞서의 다양한 모델 도입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을 고르게 분산 배치함으로써,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원거리에 유학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문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8. 국가의 장애인 고등교육 우선 추진 정책

1)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부서

2005년 3월 1일자로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업무가 인적자원관리국의 학사지원과로부터 학교정책실 교육복지심의관 내 특수교육정책과로 이관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특수교육 업무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보건 급식 업무와 함께 이루어져 오다가 특수교육정책과라는 단일 과로 분리 독립되면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업무를 가져온 결과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조치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조차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업무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맡아야 한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교무처장이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교수들도 같은 견해이다(김주영, 2005).

2년제 대학의 업무를 관장하는 학사지원과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업무를 맡아 온 기존의 경우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우선 장애인들이 진학하는 곳은 모든 대학이라는 것과,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전문 인력이 없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정책과에 장애인의 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은 현재의 직제나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폐쇄적인 업무체제상으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즉, 고등교육 업무는 어디까지나 인적자원관리국 소관으로 학교정책실 교육복지심의관이 관여하기에는 아귀가 맞질 않는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항상 인적자원관리국 해당부서와 협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고, 인적자원관리국과 중첩된 업무를 별도로 추진해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쉽게 예상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정책을 별도로 특수교육정책과에서 맡기보다는 인적자원관리국의 고등교육정책과의 일상 업무로 수행하되 장애인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예상되므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특수교육정책과와 협조체제를 이루어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2)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정책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정책을 알아본 결과(김주영, 2005) 국가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대학들이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편의가 우수한 대학을 선

정한 후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대학별로 이동 및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비용을 산출하고 수년 내에 이동 및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는 국·공·사립에 관계없이 연차계획을 세워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지원 환경 개선 투자사업을 수립하여 고르게 예산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장애인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이동과 접근편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국가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기준을 대학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파악과 확보 전략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평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를 격년제로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와 관련하여, 조사연구에 의하면(김주영, 2005)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장애학생 지원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장애학생 지원 인력과 기자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대학관계자들은 교수들의 교수-학습 방법을 평가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에서는 물리적인 여건 못지않게 교육의 질적인 지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기구 설치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혹은 주 정부, 대학교 산하에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포함한 조기 중재에서 지역사회 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과 연구를 병행하는 기관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이와 같은 지원과 연구를 담당할 기구들을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국가가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과 방안들을 구상하고 생산해 내는 곳은 이런 기구나 기관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기존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러한 기구들을 충분히 설립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 국립특수교육원 내 '고등교육 지원 연구과' 설치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장애인 교육 정책과 교육 방안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인적자원을 재교육하는 곳은 국립특수교육원이다. 1994년 설립된 국립특수교육원은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연수)을 중심으로 정책 및 교수방법 등의 연구를 주로 해 오고 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치 않다. 게다가 현재까지는 국가적인 관심이 중등교육에까지만 머물러 있어 고등교육 지원 인

력들에 대한 연수나 연구는 거의 수행한 바가 없다. 다만,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업무인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심사를 수행하였으며, 1998년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2005년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업무를 새로 맡게 됨에 따라,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국립특수교육원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한 지원과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직을 확대하여 원내에 가칭 '고등교육 지원 연구과'를 설치하고 현재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나 장애학생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현장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잇는 허브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고등교육 연구소'의 조직 및 기능 확대

또한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기능을 살려 장애인고등교육 지원 연구 및 대학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에 의하면, 대교협에서는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대학의 평가, 대학 교직원 연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기타 대학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등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거의 모든 활동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협회 내에는 고등교육연구소가 있어, 연구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과 관련한 사항, 대학교육 관련 정책 연구(평가, 입시, 연수 등) 개발, 대학의 학과별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연구개발, 대학 행·재정·시설 지원 관련 정책 건의 업무, 회원대학의 교육여건에 관한 통계 및 연구업무, 소관 업무관련 연구위원회 관장, 기타 대학교육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교협의 주요 기능인 정책 및 재정,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교직원 연수, 대학 평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학생들을 포함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부설 기관인 고등교육연구소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및 재정에 관한 연구,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교직원 연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평가 업무를 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대학 부설 장애학생 지원 연구소 설립 지원

뿐만 아니라, 각 권역별로 거점 대학을 정하거나(국립의 경우), 대학 자율로(사립의 경우) 학내에 '장애학생 지원 연구소'를 설치해 지원센터의 일반적인 역할과 함께 대학 내, 지역사회 내,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장애학생 지원 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시키며, 장애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향상시킬 연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연구소에 대해 지역 중심의 대학 평가나, 지역 단위의 장애인 지원인력 양

성 및 재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의 단점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비롯하여 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연구소', 공주대학교의 '특수교육연구소', 부산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은 기존의 센터나 연구소의 조직과 기능 보완만 하더라도 지역사회 거점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연구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구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나 나사렛대학교의 '점자음성전자교육정보센터', 단국대학교의 '특수교육연구소'와 같이 사립대학들의 장애학생 관련 지원센터나 기존의 특수교육연구소들도 그 역할과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얼마든지 장애학생 지원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학부설 장애학생 지원 연구소의 분명한 구비조건과 기능, 수행능력을 정하여 합당한 기관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지원 인력자원 개발센터 설립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와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가칭 '장애인 지원인력 자원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강의 및 학습지원이 가능한 전문 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양성하고, 각종 교육관련 보상기자재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합교육 지향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은 대학은 물론 유·초·중·고등학교의 통합교육 현장에서도 장애학생들의 학업 및 여타의 활동을 돕는 교육지원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가 시범센터를 설립하거나 민간 기관을 세 부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일본의 국립재활원은 비록 국립기관이긴 하지만 3개 부처가 공동 지원하는 대표적인 예다.

현재 수화통역사는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점역사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속기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격을 주고 있으나, 교육 지원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교육 분야의 지원 인력으로서 이들 인적자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전문적인 제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김주영·김은숙(2005)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속기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이미 교육속기의 기능과 교육속기사의 자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가 협력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곳으로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대한속기사협회 등과 같은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나 삼육재활원(재활학교, 의료재활센터, 직업재활센터)과 같은 종합복지시설이 좋을 듯하다.

5)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국책 연구 수행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정책은 풍부한 기초연구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특정 단체나 기관, 교수 개인의 관심으로서의 연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과 중기적인 계획에 의한, 그리고 우선과제 선정에 의한 단계적 기초연구들이 입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연구 결과(김주영, 2005)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관련법령의 제 정비를 비롯해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기준 수립,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대학 지원 방안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모형, 장애학생 지원 체제 완비에 따른 재정 규모, 특별전형 제도 평가 및 개선 등을 꼽고 있다.

기초연구는 주로 정확한 통계와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되어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기준과 개선전략, 국가의 대응 및 예상 비용, 재정 확보 전략 등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책연구는 주로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국립특수교육원)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수행하고, 보다 하위의 세부적인 연구(예를 들어, 교수-학습 지원 방법, 평가와 같은)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 혹은 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한 사업 선정과 투자액의 산정,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은 국가의 정책계획 수립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소들은 튼튼한 기초연구가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국가는 우선 풍부한 기초 연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앞서 제기한 것처럼 연구 과제별로 (1) 정확한 통계와 실태 → (2) 합리적인 기준과 개선전략 → (3) 국가의 대응 및 예상 비용 → (4) 재정 확보 전략 등의 단계별 내용을 포함한 국책 연구를 수년 내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이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중요 연구 과제들을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목록으로만 제시하면 <표9>와 같다.

<표9>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국책 연구 목록

구분	연구 목록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대상 장애인 출현율 조사 연구 · 특별전형 대상 장애인 수 조사 연구 · 현재까지의 장애인 대학 졸업자 및 진로 조사 연구 · 중도탈락자 수 및 원인에 관한 연구 ·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 기타
법령 및 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등교육, 장애인 복지·노동,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법 · 학칙 등 기타
대학의 잠재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잠재력 평가 · 대학의 장애인 교육 모델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장애인 진학 거점 대학 및 타당성 · 기타
외국의 동향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형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과 시사점 연구 · 유럽형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과 시사점 연구 · 아시아형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과 시사점 연구
개선 및 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대학입학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및 준거 마련 연구 · 장애학생 지원 체제 기준 및 준거 마련 연구 · 기타
자원의 확보와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자원 확보 · 지역사회 연계 확보 · 권역별 대학간 자원 협력 · 기타
교수·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 대학 내 장애학생의 기초학력 수준 비교 연구 · 장애학생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효율화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 · 기타
생활 및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대학생활과 지역사회 접근 방안 연구 ·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기타
취업 및 진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 시스템 개발 연구 ·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 연구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조직 확충과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 장애학생의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장애인 창업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 기타

V. 맺음말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일할 권리(노동), 인간답게 살 권리(복지)와 더불어, 전인으로서,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통합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도전의 성(城)이었다. 1990년대 초입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해 세웠다고 하는 특수학교에서조차 중증의 학생들은 외면당하여 골방의 닫힌 세상에서 한창의 나이를 소진해야 했다. 의무교육 대상의 60% 이상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현실을 지나오면서 근 15년 만에 이루어진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과 1995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실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소망의 분출로 실현된 장애인 교육의 이정표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분야에 새 지평을 여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하나는 앞서 말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수면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을 뿐이고, 90년대는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의 초·중등교육이 제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안정화되었다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안정화 움직임은 반대급부로 장애학생과 부모들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를 점증시키기에 충분했다. 1987년도에 법제화된 '전공과'의 설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보다 중증의 대학생들이 캠퍼스에 진입하면서 지금까지는 초·중등 교

육현장에서만 나타났던 문제들(예를 들면, 입학 및 전학 거부, 특정 수업에서의 제외 등)이 대학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장애인계 전반의 가세로 확대되어 교육권 차별 시정 요구가 법정에서까지 수용되었다. 그동안 특별전형 제도의 낮은 문턱을 넘어서 대학을 거쳐 간 장애학생들 중에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캠퍼스 내에서의 편견과 기반으로 더욱 소외되고 마침내 휴학과 자퇴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2000년대는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고등교육의 시대가 아닌가 한다. 그럴만한 이유들이 충분하다. 첫째, 2000년을 고비로 대학의 신입생 모집정원이 입학지원생수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학들은 하나 둘 '장애인이 경쟁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장애인은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 홀대받는 대상이 아니다. 둘째,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지난 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보다도 우선은 발표하였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 주위에 기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장애인계 최대 관심사인 이 법의 제정은 권리구제위원회의 소재만을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교육부분의 차별금지 조항들은 매우 소상하고 구체적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학생 지원 방안은 그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사항들이다. 물론 그 적용 범위는 고등교육기관만이 아닌 전 교육기관이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왜냐 하면, 차별로 점철되어 있던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고, 이전보다 풍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와 잠재력은 충분히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현 시점은 고등교육의 출발기를 넘어 새로운 문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할 수 있도록 토론자는 다음 세 가지 현안을 해결하도록 관계당국에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기초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관학(官學)이 함께 힘을 모아 수년 내에 달성해야 할 바이다. 장애학생이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즉,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고등교육 이전과 이후까지를 망라하는 단계별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단계별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인내를 구할 수 있다.

둘째, 대학들의 다양한 장애인 유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평가를 주문하는 요구가 높다. 그것은 이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정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유인책이 되는가, 아니면 그들의 입학을 돕고 있는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장애학생들은 특별전형제도가 우선이 아니라,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대학을 먼저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장애학생들의 접근성을 열어 보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학습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거의 50% 이상이 학습장애와 정서장애, 정신질환 학생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들은 재학생의 전반적인 기초학력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주요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며, 학습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나머지 교육이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할 수만 있다면, 당장 4년제 종합대학이나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학의 진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의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에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199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1999).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2004)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 대책.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3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 결과 발표.
 김주영(2004).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분야에서의 속기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일 연구. 재활복지연구(제2권). 경기:한국재활복지대학. 111-144.
 김주영(2005).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제도와 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장창엽 등(2001).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경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정진 등(2003).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정책연구2003-지정 -17).

주제발표 - 2

(직업교육 분야)

“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

황승욱

(경주 경희학교, 교사)

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

경희대학교 교사 황승욱

1. 시작하면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처음 제정되고 그 이후 1994년 전면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그 이전에 비해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이르는 표현 속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 전면 개정의 논의 차원을 떠나 장애 학생들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와 행복 실현이 법을 통해 이루질 수 있는가. 또한 삶의 질 향상이 바탕이 된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 논의보다는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직업, 지역사회 참여,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활동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즉 <특수학교(급)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 실태와 문제점과 졸업 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발제에 앞서 교육현장의 특수교사, 학부모 및 학생 당사자, 직업재활 및 특수교육전문가, 특수교육행정가 등이 직업교육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토론토록을 바라며, 발제자 또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관점에서 특히 그동안 발달장애학생(정신지체, 정서장애) 직업교육을 주로 담당했던 이유로 주로 발달장애 중심으로 직업교육의 몇 가지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달장애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살며, 그들이 보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인간적인 선호도와 가치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지난 20년 간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이고 공적인 투자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들의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실망스럽다

- ① 발달장애 성인의 대부분은 고용되지 못하고 있다.
- ② 고용된 발달장애 성인의 대다수가 그들의 기술이나 잠재적인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비장애 동료와 상호작용이 없는 제한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발전할 기회가 거의 없는 무보수의 직업을 갖고 있다.
- ③ 직업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 성인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다.
- ④ 발달장애 성인의 대다수는 비장애 친구가 없으며 사귀어 줄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 ⑤ 대부분의 발달장애 성인은 데이트를 하거나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

- ⑥ 발달장애 성인은 여가시간 대부분을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존재감을 항상시키는 활동보다는 TV를 보는 것 같이 수동적인 개인활동으로 소비한다.
- ⑦ 발달장애 성인은 스스로 자기 생활을 결정하는데 있어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이지 못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발달장애 성인의 이러한 실망스런 지역사회 생활 모습은 계속적으로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기관에 대한 질적 요구와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즉 개별 장애학생의 직업흥미 및 적성을 감안한 직무개발, 지역사회중심 직업교육과정, 졸업 후 장애학생의 평생 행복추구권을 지향하는 질적 담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현황

가. 연도별 특수학교(급) 수 실태

<표 1>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연 도	62	67	72	77	82	87	92	97	'02	'03	'04
학교수	10	22	38	51	65	95	103	114	136	137	141

<표 2>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연 도	71	76	80	85	90	95	2002	2003	2004
학급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953	4,102	4,366

200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41개 특수학교의 유·초·중·고·전공과 4,366학급의 과정에 특수학교 학생 23,762명 특수학급 28,002명으로 총 51,76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학교(급) 고등부 졸업생의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직업교육은 특수학교(급)의 중심적 이슈가 될 것이다.

나. 연도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진로 비교

<표 3> 연도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진로 현황

구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무직자 수
1999년	1,838명(100%)	785(43%)	481명(26%)	572(31%)

2000년	1,894명(100%)	578(30.5%)	578(30.5%)	738(39%)
2003년	1,982명(100%)	586(29.6%)	901(45.4%)	495(24.9%)

※자료 : 교육부(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졸업생들의 진학이나 취업현황을 장애별로 살펴보면 진학이나 취업률은 시각장애학생이 가장 높고(91.9%), 청각장애(90.6%), 정신지체와 지체부자유 비율은 50.5%로 거의 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후지도를 통해 고용안정단계라고 표현되는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된 취업률을 추적조사 결과 정신지체 취업률은 대략 10% 이내 일 것이다.

<표 4> 2003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단위 : 명)

시·도	졸업생 수	진 학			취 업							미진학 미취업 자수
		전공과	전문대학이상	소계	전자조립	포장조립운반	정보처리	산업디자인	이료	기타	소계	
서울	428	77	44	121	13	22	-	-	10	116	160(37.3%)	147(34.3%)
부산	143	45	12	57	4	25	-	-	9	9	47(32.8%)	39(27.2%)
대구	130	13	10	43	5	-	-	-	9	18	32(24.6%)	75(57.6%)
인천	100	8	6	14	3	23	-	-	5	25	56(56%)	30(30%)
광주	73	31	6	37	5	11	-	-	7	5	28(38.3%)	8(10.9%)
대전	77	38	4	42	-	9	-	-	15	-	24(31.1%)	11(14.2%)
울산	26	-	1	1	-	-	-	-	-	5	5(19.2%)	20(76.9%)
경기	364	82	16	98	-	74	-	62	-	100	236(64.8%)	30(8%)
강원	65	18	1	19	-	-	12	12	10	9	43(66%)	3(4%)
충북	117	22	16	38	8	27	-	-	8	9	52(44.4%)	27(23%)
충남	48	31	-	31	-	-	-	-	-	3	3(6%)	14(29.1%)
전북	107	9	9	18	6	3	-	-	2	10	21(19.6%)	68(63.5%)
전남	84	14	3	17	-	2	8	5	25	17	57(67.8%)	10(11.9%)
경북	113	37	4	41	-	-	-	17	24	66	107(94.6%)	35(30.9%)
경남	82	21	4	25	3	-	-	-	-	23	27(32.9%)	30(36.5%)
제주	25	-	4	4	-	-	-	-	3	-	3(12%)	18(72%)
총계	1,982	446	140	586(29.5%)	47	196	20	96	127	415	901(45.4%)	565(28.7%)

※자료 : 교육부(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3학년도 137개 특수학교 고등부과정 졸업생 1,982명 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은 901명으로 취업률은 45.5%이며 2002학년도 취업률 27.3%에 비해 18.2% 증가되었는데, 통계 수치상 최고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는 경북 94.6%과 최저 19.2% 취업률을 나타내는 대전을 보더라도 연차보고서 통계 자료의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이다. 최근 2005년 2월 기준으로 2004년 경북 특수학교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고등부 졸업자 145명(청각장애 7명 포함) 중 진학은 전공과 40명 대학 1명으로 진학률(41명)이 28.2%이고 졸업자 취업률은 22명 15.1%, 미취업으로 가정으로 돌아간 졸업자는 82명 56.5%로 2003년 취업률

94.6%와 비교하면 통계 수치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진학률을 제외한 취업률은 최대 20% 이내로 파악할 수 있다.

다. 특수학급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표 5> 2003학년도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수	취업현황										미진학 미취업 자수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산업디자인	이료	기타	소계	
서울	200	4	8	-	6	1	2	1	-	16	38(19%)	155(77.5%)
부산	25	5	1	2	-	-	-	-	-	-	8(32%)	17(68%)
대구	34	-	5	-	2	-	-	-	-	4	11(32.3%)	8(23.5%)
인천	51	11	3	-	2	-	-	-	-	15	31(60.7%)	20(39.2%)
광주	10	-	3	-	-	-	-	-	-	2	5(50%)	2(20%)
대전	5	-	-	-	-	-	-	-	-	1	1(20%)	2(40%)
울산	19	-	-	-	-	-	-	-	-	1	1(5.2%)	13(68.4%)
경기	127	-	33	-	6	-	-	-	-	52	91(71.6%)	19(14.9%)
강원	5	-	-	-	-	-	-	-	-	1	1(20%)	4(80%)
충북	28	-	-	1	5	-	-	-	-	15	21(75%)	6(21.4%)
충남	26	-	5	-	-	1	-	-	-	5	11(42.3%)	934.6%
전북	1	-	-	-	-	-	-	-	-	-	-	1(100%)
전남	29	-	-	-	-	-	-	-	-	3	3(10.3%)	24(82.7%)
경북	1	-	-	-	-	-	-	-	-	1	1(100%)	-
경남	1	-	-	-	1	-	-	-	-	-	1(100%)	-
제주	6	-	1	-	-	-	-	-	-	2	3(50%)	3(50%)
총계	568	20	59	3	22	2	2	1	0	118	227(39.9%)	283

※자료 : 교육부(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3학년도 특수학급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562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227명(취업률:40.0%)으로 2002학년도 취업률 29.3%에 비해 10.3% 증가되었다. 특수학교 고등부 취업률과 같이 지역간의 편차도 심하고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이 특수학교에 비하여 경증장애학생들로 구성된 점에서 보면 취업률 45.4% : 39.9%로 특수학급이 수치상 낮은 것(비록 특수학교에는 신체장애학교도 있지만)은 특수학교가 직업교육을 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라. 직업교육에 필요한 교원 실태

<표 6> (단위 : 명)

직업교사 현황										
직업교사 수			직업교사 소지자격 현황							
특수 학교	특수 학급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합계
			시행령	규정에	일반	특수	계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직업교사 수	교사	교사		의한 직업교사 수	교사	교사		
642	181	823	175	60	452	642	15	61	117	181	823

*자료 :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2004).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직업교사 수는 특수학교 175명 특수학급 15명(총 190명) 배치율 23%으로 아직 미흡하다.

마.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표 7>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장애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계
학교수	5	1	26	1	2	35
학급수	11	4	65	1	3	84
학생수	86	29	673	12	29	829

*자료 : 교육부(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학교 전공과는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장애학생의 고등부 졸업 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과정으로 93년 국립특수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이 후,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었고, 2004년 4월 현재, 시각장애학교 5개교, 청각장애학교 1교, 지체부자유학교 1개교, 정서장애학교 2개교, 정신지체학교 26개교 등 모두 35개교 84학급이 있으며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나 전공과의 설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바. 진로교육 및 관련기관 협력 현황

<표 8> 서울교육청 관련기관 협력 현황 (단위 : 교, %)

유형	전체 학교(급) 수	외부기관(노동부/보건복지부)에 의한 직업평가 실시				외부기관(노동부/보건복지부) 취업알선 의뢰 수				지역사회 산업체 협력 기관수			
		실시학교수	협력기관수	직업평가학생수	실시교수비율	실시학교수	실시교수비율	취업알선학생수	취업생수	취업알선기관수	실시학교수	실시교수비율	협력기관수
특수학교(중·고)	25	16	24	220	64	11	44	39	17	15	15	60	56
특수학급(중·고)	136	7	5	31	5	4	3	8	3	3	1	1	3
계	161	23	29	251	35	15	24	47	20	18	16	32	59

*자료 : 교육부(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2003. 9 ~ 2004. 8 까지의 실적임

지역사회 산업체 협력 기관 수 항목에서의 협력은 좁은 의미에서는 외주물품을 제공하여 주는 것에서 넓은 의미에서 반일제, 전일제 현장실습을 하도록 직업개발 협력까지 다양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의미의 협력은 직업조사, 직업분석을 통한 직업배치(시간제, 반일

제, 전일제 현장실습포함)를 의미하며 그런 의미 있는 협력의 기관수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바. 특수학교 전공과 진로 현황

<표 9> 특수학교 전공과 진로 현황

시·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미진학·미취업자수	
		전문대학	대학교	소계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산업디자인	의료	기타		소계
서울	106	1		1		20	5	1				5	19	50	55(51.8%)
부산	42											2		2	40(95.2%)
대구	15					3							6	9	6(40.0%)
광주	15				2	2		2	1				3	10	5(33.3%)
대전	51		1	1		11								11	17(33.3%)
경기도	56					6		8	1				15	30	26(46.4%)
강원	18				1	2	1	3	1	1	3		3	15	3(16.6%)
충북	23		1	1								7	3	10	12(52.1%)
충남	29					3		1					2	6	23(79.3%)
전북	14					1							6	7	7(50.0%)
전남	27												4	4	23(85.1%)
경북	34	1		1									25	25	8(23.5%)
경남	22	1		1									8	8	13(59.1%)
계	452	3	2	5	3	48	6	15	3	1	3	14	94	187	270(59.7%)

*자료 : 교육부(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학교 전공과 취업률은 전국 평균 41.3%로 특수학교 고등부 취업을 전국평균 45.4%보다 낮은 수치로서 대다수 특수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심화과정으로 들어가는 전공과의 취업률이 특수학교 고등부보다 취업률이 낮은 것과 지역간의 취업률 수치가(미진학 미취업자수 부산 95.2% : 강원 16.6%)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통계수치의 오류인지 추적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3.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문제점

가. 특수교육진흥법 직업교육에 대한 문제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라는 조항이 너무나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아예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른다.

● 진로교육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환 관점에서 언급한 특수교육진흥법상 진로교육은 제22조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고 언급해 놓았는데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관련기관(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협력**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특수교육 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규정은 성인기 직업재활과 학령기 직업교육을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전환 서비스를 조기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법 조항인데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전환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각 기관별로 협력방안 제시도 없다.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시행령 제3조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사회복지사를 임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데 전공과 대상자 선정과 기타 직업교육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재활상담사는 위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 **직업담당교사 자격 기준과 배치**

시행령 제17조 직업담당 교사의 자격기준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의 법 조항에서 자격기준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이고 장애학생 직업재활 업무와는 거리가 먼 즉 장애학생 직업적 성, 흥미 능력 평가, 훈련계획과 배치, 직무분석, 지속적인 사후지도 등과는 별 관련이 없는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직업재활을 전공한 교원 배치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전국 시·도 교육청마다 직업교사 확보율이 미진한 상태이다.

나. 특수학교 직업교육 문제점

● **직업교육 장소 및 내용**

현재 특수학교 현장 직업교육 장면을 관찰해 보면 7차직업교육과정 적용 후 일상생활 및 단순노무를 중심으로 한 업무들(예를 들어 종이에 클립을 끼우고 상자에 넣은 다음 운반하는 보호작업장과 유사한 작업)을 매일 하루에 두 시간 직업훈련으로 받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이때 직업교사는 이 과업(job)이 지역사회에서 말하는 일(work)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직업교육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긴.. 선훈련 후배치 모델) 직업내용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개인의 직업흥미와 적성도와 거리가 먼 작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직업담당교사 배치와 역할**

직업담당교사의 배치 기준이 없어 특수학교 내 적정 직업교사(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예 의한)가 부족한 현실[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는 직업담당교사가 전국 115명

(2.8%)]이다.

직업담당교사의 역할도 지역 내 직업조사, 직업분석, 현장실습(시간제, 반일제, 전일제 현장 작업경험, 현장지도지원), 지속적인 사후지도 등의 업무보다는 보호작업장 성격의 작업지도, 직업전교육 등을 주 업무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관련 기관의 조기 개입**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관련기관(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고용주, 지자체단체)의 협조는 거의 미비한 수준이며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친분 등에 의한 것이지 시스템에 의한 협조체제는 전혀 아닌 것 같다.

다. 특수학급 직업교육 문제점

● **특수학급에서의 직업교육**

완전통합을 지향하는 특수학급의 직업교육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별 학생 요구에 의한 관련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염두해 보면 개별 학생들의 졸업 후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의 자기 삶의 형태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 직업이므로 관련 전문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직업평가(적성 및 흥미) 필요한 직업분석, 현장실습(현장 중심 작업경험) 취업알선 및 지속적인 사후지도에는 직업담당교사의 미배치로 인해 소외되어 있다.

● **직업담당교사의 미배치**

특수학급에서(경북의 경우 중등 특수학급 교사 정원을 2명으로 하여 특수교사와 직업교사 배치) 직업담당교사의 미배치로 인해 특수교사가 직업평가 의뢰, 개별직업교육 프로그램 구안, 시간제 현장작업실습 제공, 사후지도 등을 특수교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의 역할부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직업교육의 전문성에 비효율적이다.

라. 전공과 운영 문제점

● **전공과 정체성 문제**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부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직업능력을 확대시켜 성인사회에서의 자립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영역별로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신지체학교, 정서장애학교는 전공과를 고등부 과정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있고 시각장애학교는 전문인료를 양성하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각장애학교는 전공과 학생 중 중도포기자가 대다수이다. 전공과에 대한 정확한 목적 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전공과 지원 부족**

199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금이 지원 되면서 교육부와 노동부의 협력사업으로 시작된 전공과는 2000년부터 노동부의 전공과에 대한 지원을 유보함으로써 교육부 단독으로 전공과를 운영하는 상태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퇴보된 느낌마저 든다. 재정고갈에 따른 지원이 힘들면 업체개발, 현장실습, 직무지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방안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는 미비한 상태이다.

● **훈련- 배치 모델 직업훈련**

발달장애학교 전공과는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원고용 개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배치-훈련 모델]을 적용해야 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사업체내 직무분석을 통한 비장애 작업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필요한 직업준비, 직업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데 전공과 직업교육은 전통적인 [훈련-배치 모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취업 성공률이 낮은 것이다. 또한 전공과를 고등부 연장으로 보는 관정도 바로 학교 내에서 [훈련 - 배치 모델]을 유지하는 결과의 산물이다.

● **관련기관의 협력 부진**

지원고용을 수립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필요한 전공과는 지역내 지자체, 사업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아주 부족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4.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정책안

가. 직업교사 자격 및 배치 규정

● **자격기준**

시행령 제17조에 포괄적으로 명기한 자격기준을 장애영역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 시각, 청각장애 학교 : 직업교육이 특정직종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직종에 맞는 기술계 전문 인력을 직업담당교사로 정한다.

- 정신지체, 정서장애학교 : 직업재활이 직종훈련이 아니듯이 직업평가,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별화된 직업 배치, 지속적인 사후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재활을 전공한 직업담당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으로 한정하여 직업교육이 직종훈련의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 **직업교사의 배치 기준 명시**

시행령에서는 직업담당교사의 배치기준(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이 없는데 특수학교(급)은 6개 학급당 1명, 전공과는 1학급당 1명의 직업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관련 기관의 협력

특수교육의 어느 영역보다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직업교육은 고등부 이후 성인사회의 전환 관점에서 봐도 지역내 관련기관(촉진공단, 사업체, 지자체, 복지관)과의 구체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일정 재정 지원을 배정 받아 직업평가, 작업배치를 위한 직무분석, 현장실습, 사후지도 등의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 때 협의체 참가 위원은 지자체 단체 실무자, 고용촉진공단 실무자, 고용주, 복지관 직업재활 실무자, 전공과 담당교사, 특수학교(급) 고등부 직업담당교사 및 기관 책임자로 하되, 실적 보고서를 1년에 한번씩 제출하도록 한다.

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직업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나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장 속으로 다가갈 수

없는 접근성의 제한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장애인고용 책임을 고용주에게만 전가하는 것보다 현장실습의 공간과 시간을 할애 받아 지속적인 현장실습을 통해 장애인 작업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서 채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장애인고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학령기 장애학생들의 현장실습(시간제, 반일제, 전일제 작업경험제공)은 의무적이어야 함이 모든 직업교육의 선결과제 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조항에 필요하다.

라. 전공과 운영방안

● **전공과 성격 규정**

현재 전공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지체, 정서장애, 지체부자유(중복장애)인 경우 학생들의 장애가 점차 중증화되기 때문에 정해진 직종중심 직업교육은 비현실적이며, 전문적인 직업훈련 대신 지역사회와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이나 지원고용 중심 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일부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과는 고등기술직업훈련으로 졸업 후 사회에서 차등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법조항도 필요하다.

● **전공과 설치 장소**

지역사회 내 사업체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 작업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파견 학급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배치 - 훈련 모델]의 지원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비장애 노동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상화 철학에도 접근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의 효과를 내기 위한 최소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내 파견학급을 만들기 위해 관련기관과도 협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지역사회 현장 속에 있는 파견학급 형태 전공과를 현재 전공과 모두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면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 **전공과 운영 주체**

전공과 설치 근거(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서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에서 보면 전공과는 특수학교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즉 운영의 주체는 특수학교장에게 주어지므로 고등학교 연장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등부 직업교육에 준하여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지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전공과에 진학하고자 할 때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분리교육의 장면으로 다시 배치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볼 수 있다. 결국 지원고용을 통해 경쟁고용의 사회통합 환경에 들어가고자 하는 개별적 욕구와 특수교육의 지향점에도 모순된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운영주체는 그 제한성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다양한 관련기관(복지관, 지자체단체, 지역내 사업체, 촉진공단 사무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주도해야 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중,고) 모두를 포괄하는 주체로서의 특수학교기관장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역사회내에 설치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성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전공과를 분리된 특수학교 내 보다는 지역의 중심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센터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법조항을 구체화시키면 될 것이다.

● **전공과 교사 배치**

전공과 학급당 2명의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1명은 특수교사, 또 다른 1명은 직업교사로 배치한다. 그리고 관련기관(노동부)의 협력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파견하는 직업재활상담사를 1명을 근무하도록 한다. 그 역할에 있어서는 특수교사는 학생들의 직업전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사는 직업평가, 의뢰, 배치, 사후지도 등 현장실습 전반을 관리하며, 관련기관의 협의체의 실무 책임자가 되고, 직업재활상담사는 지역사회 사업체를 업체 개발을 하고 취업알선 업무 전반을 맡는다.

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업교육 지원 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전공과 운영의 주체가 되어 그와 관련된 학급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업무로는 특수학급(중,고) 직업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그 중 특수학급 직업교육 지원 내용은 직업평가 의뢰, 현장실습(시간제, 전일제), 사후지도, 진로상담 등으로 하고 6학급당 1인의 직업교사를 배치한다. 지역 내 전공과가 없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학급(고),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들의 졸업 후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파견하는 직업재활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역할은 전공과 파견업무와 동등하며 전공과가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전공과 소속 파견 직업재활상담사가 그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한다.

바. 학령기 이후 직업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직업재활의 조치 강구,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현실은 신체장애인, 남성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2조와 제13조에는 지원고용과 보호보육에 대한 규정이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중증장애인(발달장애)들은 여전히 질 높은 직업재활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학령기 이후 직업재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 모든 직업재활훈련에 있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선연적으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을 중요시하는 규정보다는 재정기금을 우선적 사용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서는 보호고용, 지원고용의 직업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자립생활훈련(지역사회참여활동, 여가생활 포함)도 매우 절실한 편이다. 그러므로 지역 내 다양한 자립생활훈련센터를 만들어 언제나, 언제까지나(지속적 참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끝말

장애학생들의 학부모는 학생들이 졸업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서비스도 합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부모님들은 졸업 후 재활 직업훈련기관 및 복지관을 방문해 보지만 대다수 장애학생들은 자격조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와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 제공받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특수학교(급)에서는 특수교육의 목표가 성인으로서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학생을 도와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경증장애학생만이 고용 기회를 가지도록 안내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조직적인 전환에서 혜택을 받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좀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가능성은 더 부정적이고 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 현장 교상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과정 이상 설치된 특수학교(급) 대부분이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극히 낙후되어 있고, 중·고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직종의 대부분이 사양직종이며 졸업 후 사회에서 필요한 과업(job)과는 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요책도 없고, 관련 직업재활기관 등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수학교(급) 졸업생들의 취업이 부진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직종이 지역사회와 관련이 없고 고용촉진공단과 직업재활기관과의 연계는 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원인 규명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직업교육에 관련된 법적 장치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졸업 후 직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성인장애인 교육에 대한 어떠한 내용과 규정이 없다. 비장애학생의 평생교육지원법과 같이 장애학생을 위한 제도역시 마련돼야 한다.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업이 없거나 시설이나 가정에 방치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명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법의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들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제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의 화두가 되어 많은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한다.

지정토론 - 2

(직업교육 분야)

“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에 대한 토론”

이상훈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에 관한 토론

- 정신지체, 정서장애 학생의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

이 상 훈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의 근간이 되는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칭하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도 포함)은 1977년 제정된 이래로 다섯 차례의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동법은 더 이상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다. 또한 그간의 개정 과정에서 정책대상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즉 ‘법’이 전문개정(全文改正)되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안의 과정과 절차는 관행을 탈피하여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토론자 역시 본 토론이 다양한 논의의 출발점이기를,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서 구실하기를 기대한다.

발제자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특수학교(급) 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법’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지적했을 뿐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견해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전제로 제시된 정책안에 대한 보완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II. 발제 내용에 대한 보완

1. 특수학교 직업교사

1) 직업교사의 자격기준

(1)논의의 근거

첫째,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 (직업담당 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직업담당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 12.31, 2005.2.28>

1.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나.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

둘째, 교육인적자원부(2005. 4)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IX 질의 응답'편, p.100.

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의 표시과목 '직업교육'은 어떤 학과에서 표시가 가능한가?
 ☞ 제7차교육과정의 특수학교 직업교육에 해당하는 교과는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상업디자인'임. 그러므로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들 교과에 해당하는 전공자가 특수교육을 전공하거나, 특수교육 전공자가 이들 교과에 해당하는 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만 자격 부여가 가능함.

(2)발제자의 제안 사항

첫째, 장애영역별, 즉 시각, 청각장애학교는 기술계 전문인력으로, 정신지체, 정서장애학교는 직업재활 전공교사로 자격기준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이 직종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제17조 1항의 '가', '나'가 삭제되어야 한다.

(3)제안사항에 대한 보완 및 논의

첫째, 자격 및 자격기준, 내용규정에 관한 관련법들 간, 관련법내의 상위(相違)함이 정정되어야 한다.

둘째,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제17조 항의 '가', '나'는 선택중심교육과정 직업교육의 8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자격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과목의 경우도 해당 교과와 관련된 전문기술을 갖춘 계약제 교원(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표시방법'상의 변화, 즉 자격 종별의 변화는 공립특수학교교사 임용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격있는 직업담당교사의 배치를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경 지침이 없을 시 한시적(5년 내외)으로 직업교육교사만을 별도로 임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직업교사의 배치 기준

(1)논의의 근거

첫째, 특수교육진흥법 제20조

제20조 (직업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둘째,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8-11호)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교육과정의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명시된 기본교육과정의 '직업'(직업교과 배당 시간 수는 연간 전체 수업 시간의 30%이상임)과 고등부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서의 8개 전문선택교과로 구성되어 있는 '직업교과'에 배정된 수업시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2) 발제자의 제안 사항

시행령에서는 직업담당교사의 배치기준(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이 없는데 특수학교(급)은 6개 학급당 1명, 전공과는 1학급당 1명의 직업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제안사항에 대한 보완 및 논의

첫째, '법' 20조에서 특수교육기관인 모든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고등부와 전공과는 반드시

자격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특수학교 뿐 아니라 특수학급에서도 교육과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업교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셋째, 최소한 특수학교 중·고등부의 경우 학급당 1명, 전공과의 경우 2명,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도 학급당 1명의 직업담당교사가 배치되기를 요망한다.

넷째, '법'에서 배치기준을 명시할 경우,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기준에 상응 또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관련 기관의 협력

1) 논의의 근거

첫째,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특수교육 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특수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1.1.29>

둘째,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개별화교육 운영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 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 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개정 2001. 1.29>)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제자의 제안 사항

첫째, 지역내 관련기관(공단, 사업체, 지자체, 복지관)과의 구체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직업평가, 작업배치를 위한 직무분석, 현장실습, 사후지도 등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의체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협의체에는 지자체 단체 실무자, 공단 실무자, 고용주, 복지관 직업재활 실무자, 전공과 담당교사, 특수학교(급) 고등부 직업담당교사 및 기관 책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제안사항에 대한 보완 및 논의

첫째, 행정조직의 체계를 고려할 때,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특수교육 협의체' 구성이 우선되

어야 지역 구 단위의 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는 현행 '특수교육 협의체'에 관한 규정에 '지역별 특수교육협의체' 구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단위의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 속에 직업 및 진로교육을 포함시키고 운영위원으로 관련기관 인사들을 위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상에서 현행 '직업교육' 또는, '진로교육'의 규정 내에 별도로 가칭 '직업(진로)교육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기관 실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장중심 직업교육

1) 논의의 근거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2005.6.22)의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중에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내실화 도모
○ 특수교사 직업교육 연수강화, 특수학교·산업체 협력 보호작업장 운영 등으로 직업교육 및 전환교육 강화
※ 산학협력 보호작업장(포장, 조립 등) 운영 : 4개교

2) 발제자의 제안 사항

첫째, 현장 중심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장애인고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학령기 장애학생들의 현장실습(시간제, 반일제, 전일제 작업경험제공)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둘째,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이 필요하다.

3) 제안사항에 대한 보완 및 논의

첫째, 현장실습에 대한 일선학교의 접근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즉 현장실습이 취업의 사전절차이기도 하지만 직업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장애의 경중을 떠나 모든 학생이 고등부 1학년때부터 2년 이상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증장애 학생의 경우, 능력과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재활시설(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도 실습업체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학교에서는 현장실습담당교사의 교내 업무를 축소하거나 현장실습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업체개발, 현장지도 등 실질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재활)을 전공한 직업교사의 배치, 업무 협조 인력(직업재활사, 직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등) 지원, 관련기관(공단,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실습업체 등)과의 역할 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전공과 운영방안

1) 전공과 성격 규정

(1)논의의 근거

첫째,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 (전공과의 설치) ①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9>

둘째, 특수학교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법 제56조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운영하는 학교는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교육과정 중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학교장이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발제자의 제안 사항

첫째, 직종중심 직업교육은 비현실적이며, 전문적인 직업훈련 대신 지역사회와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이나 지원고용 중심 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시각장애, 청각장애, 일부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과는 고등기술직업훈련으로 졸업 후 사회에서 차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조항도 필요하다.

(3)제안사항에 대한 보완 및 논의

첫째, 전공과의 정체성을 전문기술교육기관 혹은 지원고용이나 적응훈련, 전환교육기관 혹은 단순히 학령기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해당학교별로 운영방침과 특성의 차이일 뿐이다.

둘째, 전공과 학생 중 졸업 후 진로가 막연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진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전환계획 수립과 관련기관으로의 전이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셋째, 해당학교별 별도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하며 중고등부의 직업교육과 연계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전공과 설치 장소

(1)논의의 근거

첫째,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 (전공과의 설치) ①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9>

둘째, 교육인적자원부(2005.6.22)의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중에서

□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
○ 근로현장과 연계교육을 위한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 확대
○ 특수학교 전공과 34개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취업지도 및 알선수당 지급확대(노동부)
※ '04년 20교 → '05년 34교(취업지도 1인 5만원, 알선수당 1인당 15,000원)

(2)발제자의 제안 사항

지역사회 내 사업체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 작업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파견 학급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제안사항에 대한 보완 및 논의

'법' 제21조에 근거한다면 고등부 특수학급에서도 전공과가 설치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내 구 또는 군 단위로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전공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공과 교사 배치

(1)논의의 근거

첫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①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둘째, 교육인적자원부(2005.6.22)의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중에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내실화 도모
 ○ 특수학교 전공과 34개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취업지도 및 알선수당 지급확대(노동부)
 ※ '04년 20교 → '05년 34교(취업지도 1인 5만원, 알선수당 1인당 15,000원)

□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
 ○ 특수학교 전공과 34개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취업지도 및 알선수당 지급확대(노동부)
 ※ '04년 20교 → '05년 34교(취업지도 1인 5만원, 알선수당 1인당 15,000원)

(2)발제자의 제안 사항

첫째, 전공과 학급당 2명의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1명은 특수교사, 또 다른 1명은 직업교사로 배치한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직업재활상담사를 1명을 파견근무하도록 한다.

둘째, 특수교사는 학생들의 직업전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사는 직업평가, 의뢰, 배치, 사후지도 등 현장실습 전반을 관리하며, 관련기관의 협의체의 실무 책임자가 되고, 직업재활상담사는 지역사회 사업체를 업체 개발을 하고 취업알선 업무 전반을 맡는다.

(3)제안사항에 대한 보완 및 논의

첫째, 전공과에 대한 인력 지원 및 업무 협조, 지원고용을 위해 공단 지역사무소에 소속된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가 파견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

둘째 차선의 방안으로는 공단 소속 직무지도원이나 특수학교보조원('06년 3,000명 배치 예정), 공익요원(특수교육 보조요원으로 활용토록 병무청과 합의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에서 전공과 교사 배치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5.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직업교육 지원 방안

1) 논의의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2005.6.22)의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중에서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확대
 ○ 장애학생의 진단·평가지원, 교수-학습지원, 부모 상담 등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활성화
 - 전국 모든 지역 교육청 단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 설치
 ※'04(167개소) → '05(182개소)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18개소에 특수교육교사, 치료교육교사 등 전담인력 2명 배치 및 운영비 지원('05)
 ·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및 활동비 등 9억원 지원(국고 50%)
 · '06년 농어촌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60개소로 확대

2) 발제자의 제안 사항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공과 운영 및 특수학급(중,고)의 직업교육, 즉 직업평가 의뢰, 현장실습(시간제, 전일제), 사후지도, 진로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특수학급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6학급당 1인의 직업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파견하는 직업재활상담사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한다.

3) 제안사항에 대한 보완 및 논의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 인력배치 등의 사항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및 인식부족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으로 지방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III. 나가는 말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업교육이란 무엇인가?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는 각자의 관점에서 '직업기술교육', '직업준비교육', '직업재활', '직업훈련' 등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특수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의 의미는 학교 행정가와 교사, 교과담당교사와 직업교육담당교사, 직업교육담당교사들 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同床異夢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싶다면, 필요하다면 '법' 제2조에 '직업교육'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지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은 최소한이라고 한다.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타당하지 법은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사 역할이나 교육내용, 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특별하고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직업적 욕구를 가진 개개 학생들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당연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것, 생산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닐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특수교육정책과가 신설되고 인원이 보강되었다고 한다.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 및 전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한다. 법령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와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제안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각기 다른 생각과 의견들,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주제발표 - 3

(평생교육 분야)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안"

김기룡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안

김기룡 (장애인교육권연대)

1. 장애인의 평생교육

1) 개념적 정의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은 지난 몇 년간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현재 협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것에 장애인의 내용을 삽입해 평생교육의 개념의 폭을 넓히고자 시도했다. 현재의 평생교육은 생의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특정연령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평생교육은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는 Dave(1976)등이 제시하고 있는 광의의 평생교육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이라 정의하는 협의의 정의가 아니라 시간의 축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수직적 통합을, 장소의 축에서는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이라 규정하고, '교육의 보편성·종합성·연계성·융통성·다양성·자율성·자기실현을 특징으로 하는 제반 의도적·조직적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지금의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개념은 기존의 평생교육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지식기반사회와 인적자원개발의 시대에 적합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평생교육의 방법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고도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문해 성취를 위한 정부문해교육,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교육,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교육 등을 그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장애인 개개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하며, 이를 통해 역량을 개발해 한 사람의 경쟁력 있는 인간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²¹⁾

2)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교육이나 학습의 중요성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관점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존재로 존엄성을 인정받아 그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적 배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후기 중등교육 수준 혹은 이에 상응하는 직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수준은 현행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저 자격 수준이고, 동시

에 사회적 민주적 참여에 필요한 최소 자격수준이기도 하다. 장애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 체제 하에서는 장애인들이 이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쉽지 않다. 장애인 교육은 평생교육 관점보다는 정규학교 교육 관점에서 설계되고,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령기가 지난 장애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장애로 인해,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몰이해로 인해 필요한 교육을 계속 받지 않으면 삶의 질 향유는 물론,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고 자기를 제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평생교육은 가장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논의로 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은 더욱 심한 정보소외, 지식소외, 인간소외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차별없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으며, 사회에 참여하여 원하는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그 무엇보다 우선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실천 과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비판적 접근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목표와 전략 역시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최근 평생교육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있는 도구로서 평생교육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평생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의 영역으로 국한된 교육의 개념을 학교교육의 영역을 포함한 형식,비형식,무형식의 모든 교육을 정의내리기 위해 사용한 새로운 교육학의 개념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에 의해 독점되어진 기존의 교육의 영역을 깨트리고, 동시대에서 필요한 교육적 방법과 목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교육이라 명명하고, 기존의 교육의 폐쇄성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교육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실질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모색하려 했던 평생교육은 시대적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그 본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평생교육은 인적자원개발, 지식기반사회, 삶의 질 등과의 '사실적 관련성'에 기반하여 그들 사이의 '개념적 관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힘을 허비하고 있다.

최근 평생교육이 인적자원개발의 도구쯤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식기반사회 등의 거대담론에 의지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학문적 식민주의를 폐기해야 한다. 평생교육이 본연의 계획을 시도하고, 자생적 이론들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 시대적 조류에 휩쓸려 그 취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평생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이러한 인식론적 고민은 희석되어버렸으며 도구적 합리주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²²⁾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쟁점이 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전략 설정 등 일련의 평생교육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평생학습이 순환교육, 인적자원개발의 가장일 뿐이고, 1972년 이래 학습사회의의미는 신자유주의의 구조개혁과 자유시장주의의 지배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세계화와 초차본주의에 의해 조정되는 기능주의적

20)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01.12. pp.13~15.

21)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향 탐색", '특수교육 제2권 제1호', 2003. pp.5~7.

22) 한송희, "평생교육론:거대담론과의 결별과 학문으로서의 자기 탐색의 계기 만들기", 평생교육학연구 제8권 1호, 2002. pp.221~225.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UNESCO에 의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확산된 평생교육 개념은 OECD와 EU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신자유주의의 도구로서, 실업 완화를 위한 21세기 전략으로서의 평생학습으로 전환되었다. UNESCO의 평생교육 이념이 민주주의의 도구라면, OECD와 EU의 평생학습은 거의 완전히 금전등록기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비난한다.²³⁾

이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최근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시대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장애인이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량강화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적 지원 전략에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이것이 지금의 평생교육 논의의 한계이고, 앞으로 수없이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할 개선 과제이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현황

1) 법적 정의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 기회의 균등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 각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결국 개인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장애인 역시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제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아야 하는 교육권이 학령기를 비롯하여 특정 시기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도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신앙,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과 학습기회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 역시 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기초한 평생교육의 권리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교육을 국가의 책임임을 교육기본법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교육상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의 하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제4조 1항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을 규정하고, 장애인도 평생동안 교육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장사항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 기회 보장이 법률상으로 강제되고 있지 않다.

23) 박성정, “평생교육 관점에서 본 인적자원개발체제”, 평생교육학연구 제7권 2호, 2001, p.163.

장애인 관련 법에서의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34조 “장애인 복지시설기관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중 장애인 복지시설 기관의 교육비 지원 규정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복지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라고 그 대상을 연령에 제한없이 명시하고 있어, 특수교육진흥법 상에서도 연령과는 무관한 평생교육적 지원 내용을 법률로써 정의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 조항들 중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각 법률의 제정 목적 또는 개념 정의 조항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조항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항은 전혀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정책적 지원 현황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 사항 중 “초, 중등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마련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을 계획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의거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0월 8일,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03~2007)”을 수정하고, 이 계획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 5년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기초자료를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4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5년에는 “장애성인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함.
- 장애성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비, 야학운영비(학생수 기준),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지원방안을 검토함.
-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야학 등 장애성인 평생 교육 실태를 조사한 후 지원 방안을 강구함.

또한 2005년 4월 25일, 특수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성인 야간학교에 대한 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문해교육과 검정고시 준비 등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성인 야간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아직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일시적 지원책으로 국한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 5월 20일, “장애인 진로 및 평생교육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 현재 평생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7월 30일까지 설문 조사 완료)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TFT’ 구성을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

2004년 11월, 정기국회에서는 장애성인 야간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국회 구논회의원실과 최순영의원실을 중심으로 지적된 바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야학의 지원 대책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었다.

한편, 안병영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 야학의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기도 했다.

1. 기존 특수교육발전계획(2004년 10월 8일 발표)에 의거해, 장애인야학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야학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2.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 사업의 형태로 장애인야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3. 장애인야학의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기관 등의 여유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24)

그러나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2004년 하반기부터 논의되어 왔던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원 방안은 주로 장애인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의 지원 방안 등에만 국한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정책이 계획에만 포함되었을 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

1) 주요 평생교육기관 현황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은 그동안 별도의 지원 기관 없이, 기존의 복지 관련 기관 및 고용 관련 기관 등에서 진행되어 왔고, 일부의 경우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자료집에 의하면, 평생교육 지원 기관을 ▲장애인 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장애인고용기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기관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기관의 경우 협의의 개념에서 평생교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제외하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해 아래와 같은 평생교육기관의 현황을 제시한다.

<표-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²⁵⁾

구분	지원기관	지원부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	------	------	------	------

24) 제250회 정기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제6차 회의록(2004년 11월 19일) 중 위 내용만 발췌.

장애인 복지기관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 장애영, 유아 ○ 장애학생 ○ 장애성인 ○ 장애노인	○ 의료재활 ○ 직업교육 ○ 생활교육 및 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기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특수학교(급) ○ 직업전문학교 ○ 고용개발원	○ 보건복지부 ○ 교육인적자원부 ○ 노동부	○ 장애성인 ○ 장애학생 ○ 장애성인	○ 직업교육 ○ 생활교육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관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보건복지부	○ 장애성인	○ 생활교육 및 지원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기관	○ 장애인야학, 일반야학 ○ 복지관 및 교회 내 검정고시 공부방, 장애성인 학습봉사 동아리 ○ 검정고시 학원 ○ 평생교육지원 기관 내 한글교실	○ 교육인적자원부	○ 장애학생 ○ 장애성인	○ 문해교육 ○ 생활교육

① 장애인복지기관

장애인 복지기관에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이 있고,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이 있다. 각 시설에는 생활 또는 이용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 직업교육,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상이 장애성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영유아에서부터 장애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아우르고 있다.

이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관을 말하는데, 전국에 약 10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도 다양한데, 진단·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정보제공사업, 수화관련사업, 여성장애인복지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홍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교육적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재활(치료교육), 직업재활(직업교육), 사회교육(교양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학력 미취득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글교실 등을 열어 비문해 장애인들에게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② 장애인 고용지원기관

25) 정동영 외,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01.12. p.47. 의 표 내용에 민간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해 표를 재구성했음.

장애학생이 학교에서부터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기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교를 가지 못한 장애성인 역시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훈련하게 하며, 직업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장애인의 직업 훈련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고 필요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직업재활시설이 그 중 하나이고,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또 다른 하나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경쟁고용(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한 작업환경에서 훈련을 받거나 작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 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된다.²⁶⁾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전문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시설로서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 생활의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치해, 장애인의 고용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원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③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관

1990년대 한국에도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운동의 이념이 도입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로 해, 2000년도 초부터 전국 각 지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민간 주도로 설립되고 있다. 이곳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 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이용 교육, 자립생활 기술 훈련 프로그램, 직업 혹은 고용 서비스, 재정 지원 상담, 동료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전국에 약 20여곳 이상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규에 자립생활센터 지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직 각 지역의 자립생활센터가 독자적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립생활이념교육과 같은 내용은 평생교육의 개념 중 교양교육 또는 시민교육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과 직업 혹은 고용서비스는 직업교육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립생활센터가 각 지역에 활성화된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중심의 주거형태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은 서울 지역의 경우 111개소(2004년 현재)에 달할 정도로 전국 각 지역에 많이 설립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주거훈련, 직업교육, 여가교육, 성교육 등 성인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 역시, 직업교육과 여가교육 등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사회복지사가 전체 교육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각각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교육 지원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④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기관

2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3.6.13 보건복지부령 250호) 별표3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제32조관련],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기준[제33조관련]

전국민의 비문해율(문맹률) 약 8%에 비해 장애인의 비문해율은 50%가 넘는다.(초등학교 졸업 학력 기준) 이와 같은 장애성인의 비문해 수준은 마치 해방 이후 우리 나라의 문맹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 해방 이후 국민의 높은 문맹률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문해 교육 사업이 실시한 적이 있었다.²⁷⁾ 하지만, 장애성인의 경우 그동안 이러한 높은 문맹의 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으며, 국가 차원의 장애성인 문해 능력 신장을 위한 정책은 당연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도 장애성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해 교육 지원 정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의식있는 개인 또는 민간 기관이 주도하여 일부 장애성인들에게 문해 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목표로 지역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의 2001년 성인 문해 조사 도구를 이용한 성인 문해 조사에서 우리 나라의 성인 대부분의 문해 수준이 중, 하위권으로 지적되고, 성인문해교육 관련 기관 등의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수립하려 하고 있다. 2003년 정부에서는 '전국민 잔류 비문해자 해소 운동'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서부터 최근의 잔류 비문해자 해소 관련 정책에서도 장애성인의 비문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다. 따라서 비문해자를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야학 등 장애성인을 위한 문해 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장애성인을 위한 문해 교육 사업은 오히려 민간에서 더욱 활성화 되어 진행되고 있어, 최근 몇몇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성인을 위한 민간 주도의 문해 교육 기관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우선 사설교육기관, 장애인야학, 복지시설 등의 공부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곳들은 정부의 특별한 보조 없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주도아래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문해교육 등의 기초교육 사업 이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장애성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애성인을 위한 민간 주도의 문해 교육 기관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27) 해방 후 국내 12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78%가 문맹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미군정의 문해교육사업과 한국 정부의 국문보급 5개년 사업 등을 통해 문해교육 사업이 실시되었고, 이러한 성과로 1948년 문맹률은 41%선으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문해교육 사업 실시의 이유는 1947년 보통선거 실시를 앞두고 최소한의 한글을 국민들이 알아야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정부는 국문감습소와 공민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통해 문해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이중 공민학교의 경우 국민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13세 이상의 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 기초 과정을 교육했는데, 당시 공민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1947년의 경우 80여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러한 문해 교육 정책은 1950년대 "국문보급 5개년 사업 정책"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실제로 당시 교육 정책을 담당했던 문교부는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전국의 국민학교에 공민학교를 설치했다. 공민학교에는 성인반을 별도로 설치해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관련 문해 교육 교재도 개발 보급했다. 이러한 5개년 사업은 매년 1백여만명에 가까운 성인들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켰으며, 때문에 1958년에는 문맹률이 4.1% 수준으로 급감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1960년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후 추진된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도 대대적인 문해교육을 실시했지만, 문맹률이 10%대 미만으로 유지되자, 이러한 문해교육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이희수 외,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2. p.122.)

<표-2> 민간 주도의 장애성인 문해 교육 지원 기관의 유형 및 현황²⁸⁾

민간기관의 유형	종류	특징	추정 개수	비고
전문기관	시설 검정고시 학원	매월 20여만원 내외의 학원비를 지불해야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성인들이 이러한 교육기관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6개소	1999년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장애성인) 야학 기관	문해교육 및 검정고시 교육 서비스 제공. 검정고시 졸업 기회를 제공해 장애성인들의 교육연한을 확장시켜 줌.	14개소 (20곳 이상)	2005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비전문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역 내 문화센터 등	문해교육에서부터 검정고시교육, 대입수준준비 교육 등 다양하지만, 교육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진행됨.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추정 불능	
	공부방, 교회 학습봉사동아리 등.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개인 교습 형태로 학습 봉사를 함. 교육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 수혜 장애인의 수가 너무 작음.	추정 불능	

민간 주도의 장애성인 교육 지원 기관을 전문기관과 비전문기관으로 나눈 주된 이유는 전문강사의 존재 유무, 일련의 학습 계획을 갖고 장기간 교육 제공 유무, 적절한 교육 자료와 교육 환경 제공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 내 문화센터 등에서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수요자가 발생하거나,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교육이 성립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선사업가 등이 지역에서 소규모로 만든 공부방이나, 교회 또는 대학 동아리 등이 운영하는 학습봉사동아리 등은 교육을 담당할 주체가 대부분 대학생 자원봉사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들은 별도의 학습 지원 체계를 통해 문해 교육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개인의 선심과 의지에 따라 교육 지원의 수준이 결정되는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에게 문해 교육 지원 체계는 불안정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실제로 많은 장애성인들이 문해 능력을 획득했으며, 나아가 학력 신장의 기회도 취득하기도 했다. 특히, 장애인야학의 경우, 별도의 교육 과정 수립, 훈련된 교사에 의한 교육 지도, 적절한 교육 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 등 일반 교육 기관에는 못 미치지만,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통해 나름의 전문적 기초 교육 지원 체계를 장애성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지역에 거주

28)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출범보도자료 중, 2004.10.25.

하는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수학 등의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 과정의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입을 위한 수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 학습 활동(소풍, 수련회, 야유회 등)과 특별 활동(노래, 연극, 작문 등)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단순한 문해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개별 교육기관의 역량에 달려 있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교육기관이 많이 있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특수교육적 지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2)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주요 요구 내용

정부 주도의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관련 법(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민간 주도형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본적인 단계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많은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별도의 시민사회단체를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차원에서 내실있는 정책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 마련을 위한 일시적 TFT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구 사항으로 정리한 바 있다.

① 법적 조항 마련 -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

평생교육시대에 걸맞게 장애성인들에게도 동등한 평생교육의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성인의 평생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명시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성인을 위해 일반 평생 교육 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편의시설을 정비하며,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홍보와 교육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② 정책 수립 -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안) 수립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종합 실태조사"를 근거로 장애성인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구 기간이 1년이 걸리고, 연구 작업을 토대로 관련 정책이 세부적으로 수립된다면 몇 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장애성인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의 고용 지원 등 타 부처와의 연계된 정책 마련이 필수적임. 따라서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 지원 정책 수립은 다른 부처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만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반면 이러한 작업이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장애성인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적합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장애성인야학 기관 지원'내용을 포함한 장애성인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③ 협의체의 구성 -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을위한 TFT" 구성

현재 장애성인 평생 교육 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당사자,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이미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각 방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실태를 분석, 조사하고 미래의 장애성인 교육 지원 체계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종사자들과 관련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을 위한 TFT를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구성하고, 여기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당사자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